

검정 고시 매뉴얼

교육기관용



발간사

검정고시제도는 1950년대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학습자가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정고시제도를 활용하는 학습자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이에 정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학습자의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배움을 통해 학습자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18년 5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검정고시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정고시지원센터는 초·중·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검정고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 수행 및 검정고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그리고 검정고시제도와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운영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검정고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검정고시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검정고시제도에 대한 개관과 검정고시 시행 및 응시 관련 안내, 검정고시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나아가 검정고시 합격자의 후학습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합격 후의 진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평생교육제도와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는 저학력 성인학습자의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검정고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검정고시 매뉴얼이 검정고시제도를 활용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 그리고 학습자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윤여각**



일러두기

이 매뉴얼의 내용 중 일부는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검정고시 응시나 안내는 최종적으로 교육청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검정고시제도 개관	1. 검정고시의 개념과 현황 10	5 검정고시 후의 진로	1. 중등학교 진학 50
	2. 검정고시의 연혁 11		2. 대학 진학 51
	3. 검정고시의 법적 근거 12		3. 해외 유학 70
2 검정고시 시행 개요	1. 출제 14	6 평생교육제도 안내	1. 평생학습계좌제 72
	2. 고시 시행 15		2. 학점은행제 73
	3. 검정고시 시행 절차 17		3. 독학학위제 75
3 검정고시 관련 기관	1. 추진체계 20		4. 대학평생교육 지원 77
	2. 관련 기관 역할 20		5.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79
	3.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 23		6.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80
4 검정고시 응시	1. 응시자격 32		7. 내일배움카드제 82
	2. 제출 서류 33	부록	
	3. 출제 방향 41		1. 검정고시 관련 법령 86
	4. 응시 과목 면제 43		2. 검정고시 학습자의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신청 107
	5.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사항 45		3. 검정고시 Q&A 114
	6. 응시자 유의사항 45		4. 검정고시 지진 및 화재 대처 행동 요령 116
	7. 합격 통보 절차 및 합격증 발급 46		5. 타 부처의 검정고시 관련 프로그램 117
	8. 규정 변경에 따른 합격 인정 과목 47		6. 검정고시 응시자의 제출 서류(서식) 118
	7. 검정고시 교육기관 활용 양식 135		
	8. 검정고시 통합상담센터 139		
	참고 문헌 140		

1 검정고시제도 개관

1. 검정고시의 개념과 현황
2. 검정고시의 연혁
3. 검정고시의 법적 근거

1

검정고시제도 개관

1. 검정고시의 개념과 현황

- 검정고시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의 규정에 따라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시험제도임.
- 현재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초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중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고졸검정고시”)로 나뉘⁰¹
- 2018년 검정고시 합격자의 현황은 <표 1>과 같음.

<표 1. 2018학년도 검정고시 합격 현황>

(단위: 명, %)

분류	회차	지원자수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초졸	제1차	2,182	1,994	1,846	92.58%
	제2차	1,908	1,728	1,412	81.71%
합계/평균		4,090	3,722	3,258	87.53%
중졸	제1차	6,421	5,825	4,507	77.37%
	제2차	5,736	5,220	3,881	74.35%
합계/평균		12,157	11,045	8,388	75.94%
고졸	제1차	23,221	20,243	14,288	70.58%
	제2차	24,499	20,942	13,845	66.11%
합계/평균		47,720	41,185	28,133	68.31%

01 과거에 “중입검정고시”, “고입검정고시”라고 했던 것을 현재는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로 개칭함.

2. 검정고시의 연혁

- 초졸검정고시는 2015년까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로 불리면서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2015년부터 교육부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중졸검정고시는 195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71년 고시 시행청이 시·도 교육위원회로, 1992년도에는 시·도교육감으로 변경되었음.
- 고졸검정고시는 1950년부터 시행되었고, 1969년에는 고졸검정고시위원회(전국 6개 대학)가 설치되었으며, 1970년에는 고졸검정고시위원회를 시·도교육위원회에 이관하였음. 1989년에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교육장으로 변경하였고, 1992년에는 시·도교육장을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하였음.

<표 2. 검정고시 관련 주요 연혁>

구분	연도	주요 개정 내용
초등학교 ⁰² 졸업학력 검정고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 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시행 • 고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국어, 수학, 사회 생활, 과학, 체육보건, 외국어 - 선택: 수학, 외국어,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음악, 미술, 수공재봉 중 택 3 • 합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시행
	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시행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장관에서 시·도교육위원회로 위임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시행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교육감으로 변경

02 김성기 외(2018), <검정고시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방안 연구 보고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구보고, RR 2018-5. p.13

구분	연도	주요 개정 내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시행 • 고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국어, 수학, 사회 생활, 과학, 체육보건, 영어 - 선택: 수학, 과학, 특정경제지리, 외국어,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음악, 미술, 심리 중 택 3 • 합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시행 • 고졸검정고시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6개 대학(서울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6개 대학에 설치된 고졸검정고시위원회를 시·도교육위원회에 이관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교육장으로 변경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도교육장을 시·도교육감으로 변경

3. 검정고시의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9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제44조

* 부록 참조

2 검정고시 시행 개요

1. 출제
2. 고시 시행
3. 검정고시 시행 절차

2

검정고시 시행 개요

1. 출제

- 검정고시 문항 출제는 시·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짐.
- 검정고시의 문제지 규격은 8절 종절지 양면 인쇄이며, 검정고시 시험은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 4지선다 객관식 시험임. 초졸의 경우 전체 시험과목의 문항 수는 20문항(문항당 5점)이고 중·고졸의 경우 수학은 20문항(문항당 5점)이고, 나머지 과목의 문항 수는 25문항(문항당 4점)으로 되어 있음. 검정고시 과목 수는 초·중졸의 경우 6과목, 고졸의 경우 7과목임.

〈표 3. 검정고시 문제지 규격〉

구분	형식
규격	• 8절 종절지 양면 인쇄(단, 중·고졸 국어는 8절 4면)
유형	• 단일형 인쇄

〈표 4. 검정고시 문항 수와 배점〉

구분	문항 수	배점
초졸	• 각 과목별 20문항	• 각 과목별 문항당 5점
중졸	• 각 과목별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 각 과목별 문항당 4점 (단, 수학은 문항당 5점)
고졸	• 각 과목별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 각 과목별 문항당 4점 (단, 수학은 문항당 5점)

〈표 5. 검정고시 과목〉

구분	고시과목	비고
초졸	•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4과목) •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6과목
중졸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5과목) •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6과목
고졸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6과목) •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7과목

2. 고시 시행

- 검정고시는 연 2회에 걸쳐 시행됨. 제1차 시험은 2월 초순에 공고를 내고 4월 초·중순에 시험을 보며 5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함. 제2차 시험은 6월 초순에 공고를 내고 8월 초·중순에 시험을 보며 8월 하순에 합격자를 발표함.

〈표 6. 연간 시험 일정〉

구분	회차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학력조회
초졸 중졸 고졸	제1차	2월 초순	2월 중순	4월 초·중순	5월 중순	5월 말~8월 초
	제2차	6월 초순	6월 중순	8월 초·중순	8월 하순	8월 말~11월 초

※ 세부일정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표 7. 검정고시 2018년 제1차 시험 일정 예시〉

구분	일자	비고
시험장소 공고일	2. 5(월)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온라인 접수	2. 19.(월) ~ 2. 22.(목)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https://kged.gne.go.kr/edusys.jsp?page=sqa_m70000)
	현장 접수	2. 19.(월) ~ 2. 23.(금) • 외국학력 인정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현장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취소기간	2. 26.(월) ~ 2. 27.(화)	
시험일	4. 7.(토)	
합격자 발표	5. 10.(목)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초·중·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함.

〈표 8. 검정고시 2018년 제2차 시험 일정 예시〉

구분	일자	비고
시험장소 공고일	6. 8.(금)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온라인 접수	6. 18.(월) ~ 6. 2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https://kged.gne.go.kr/edusys.jsp?page=sqa_m70000) 외국학력 인정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현장 접수만 가능)
	현장 접수	6. 18.(월) ~ 6. 22.(금)
원서접수 취소기간	6. 25.(월) ~ 6. 26.(화)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시험일	8. 8.(수)	
합격자 발표	8. 27.(월)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함.

• 검정고시는 7교시로 이루어지며 과목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함.

〈표 9. 검정고시 2018년 시험 시간표 예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13:30)	5교시	6교시	7교시	
시간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3:40~ 14:10	14:30~ 15:00	15:20~ 15:5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과목	초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1 선택2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시험 공통사항**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 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매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 시각장애 및 뇌병변장애 응시자 중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에 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과목별로 10분 연장함.

*** 초졸**

- 일반 응시자의 일부 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3. 검정고시 시행 절차

• 검정고시 시행은 시·도교육청별로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그림 1〉과 같음.

〈그림 1. 검정고시 시행 절차〉

문제지 인수 및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지 인수, 내용물 확인 점검 문제지 보관 보안 관리
고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사 시행 본부 구성·운영 고사장 책임자 책임하에 고사 진행
답안지 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지 인수, 내용물 확인 점검 중졸·고졸 OMR 답안지 입력(리딩) 및 채점작업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합격증서 교부 및 합격증서 수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증서 교부
합격자 학력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조회(합격일로부터 80일 이내)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 합격자 발표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검정고시 시행절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검정고시 관련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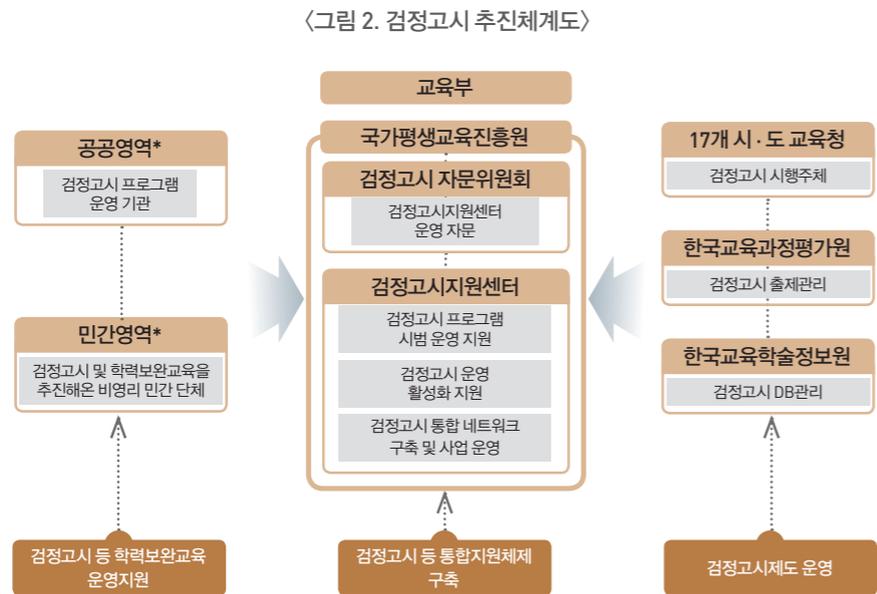
1. 추진체계
2. 관련 기관 역할
3.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

3

검정고시 관련 기관

1. 추진체계

• 검정고시 추진체계는 <그림 2>와 같음.



2. 관련 기관 역할

가. 교육부

- 검정고시지원센터 운영 사업 총괄
- 검정고시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추진

나. 시·도교육청

1) 검정고시위원회 구성·운영

- 고시의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및 고시의 시행

- 출제, 채점 및 합격증 발급
- 그 밖의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출제관리 계획

- 출제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 출제(평가)위원 위촉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추천

3) 시험관계관 위촉

- 시·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위촉하여 부정행위 방지 및 원활한 고사 진행

4) 검정고시 시행 및 답안지 채점

- 시·도교육청별 고사장에서 검정고시 시행(전국 동일) 및 답안지 수거 후 보안시설에서 채점 진행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전 과목 합격자 학력 조회

- 전국 동일 날짜에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게시, 자동응답 ARS, 문자발송 등 시·도교육청 자체 운영
- 전 과목 합격자 학력 조회는 합격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조회

6) 기타: 대입전형자료(합격 및 성적증명서) 온라인 제공 대상자 정보 생성 및 오류 검증

-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전형자료 생성, 오류 검증, 암호화 파일 생성(마감 기간 엄수)
- 대입전형자료 오류 검증 결과에 대한 확인
 - 외국인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제외한 오류에 대해 반드시 원본 자료 대조
 - 오류내용 수정 후 반드시 대입전형자료 생성 과정부터 재수행
 - “요청제외자”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 시행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원본 자료 관리
 - 대학 수신기간 동안 원본 자료 변경 방지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제증명 업무
- 처리 부세(민원)에 해당 내용 안내
 - 온라인 제공 신청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대학 수신기간 동안 원본 자료 변경 요청 시, 검정고시 합격자가 직접 해당 대학에 자료 변경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전형자료를 대학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
- 전산처리 시스템(인프라) 점검 및 관리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관련 WAS 서버 인증서 점검
 - 온라인 제공에 대비한 시스템 점검 및 정비, 회선 점검 및 전산 시스템 보안 관리
 - 특히, 대입전형자료 수신기간 중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최소 1주일 전에는 관련 기관 전체에 통보

다. 검정고시지원센터⁰³

- 1)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밖 학습자의 교육기회를 지원하고자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 관리 시행
- 2) 검정고시 운영활성화 지원
 - 검정고시 관련 연구 추진
 - 2018년 '검정고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방안 연구'와 '검정고시와 평생교육제도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 검정고시제도 매뉴얼 및 리플릿 개발(교육기관용, 학습자용)
 - 검정고시 학력취득자 진로·진학 현황조사 추진
 - 검정고시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조사·분석 추진
 - 검정고시 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 3) 검정고시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운영
 - 검정고시지원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검정고시제도 시행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홈페이지 구축 및 시범운영(2019년 5월 개통)
 - 검정고시 담당자 직무연수 및 컨설팅
 - 검정고시 통합 상담센터 운영(대표번호: 1800-4602)
 - 검정고시 교육기관 우수사례 공유 등 성과공유회 추진

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시·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 위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 출제, 채점, 정답 공개, 기출문제 정보 공개 등을 시행

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생성 제공,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시스템 개발·점검, 운영 지원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03 검정고시지원센터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지정·운영하고 있음.

3.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

가. 기관의 정의 및 유형

- 1)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라 함은 '기관'이라 함이란 평생교육기관 중⁰⁴ 국비를 지원받아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등 학력보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시설, 기관 등을 의미함.
- 2) 기관 유형
 - [공공형] 학력보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시·도, 시·군·구,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운영 중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
 - [공공기관] ①지자체직영 ②교육청 등 유관기관 ③국·공립학교 ④기타(국·공립)
 - [민간형] 검정고시(학력보완 교육)를 추진해 온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기관] ⑤민간단체 ⑥문해교육 전담기관 ⑦야학 ⑧복지관 ⑨(사립)학교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 ⑩종교단체 ⑪기타(사립·개인)
 - [교육청 등 유관기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문해교육 전담기관(한글학교, 시민학교 등, 전체 프로그램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90% 이상인 기관, 학교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교 및 학력인정·미인정 평생 교육시설 등)

나. 기관의 기능 및 업무

- 1)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 기관은 초·중·고등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시험과목의 수업을 운영함.
 - 기관별 검정고시 운영 프로그램은 <표 10>과 같음.

04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음.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평생교육직업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출처: <http://www.law.go.kr/lsiseq=183509&efid=20170530#0000>

〈표 10.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연번	지역	기관명	운영 프로그램	주소	연락처
1	서울	삼성실업학교	중등 (국,영,수,과,사,도) 고등 (국,영,수,사,과,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나길 15 삼성실업학교	02-842-5263
2		너른마당사회 적 협동조합	초등 (국,수) 중등 (국,영,수,사,과) 고등 (국,영,수,사,과,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0다길 10 세창빌딩 3층	02-921-2171
3		신당야학	고등 (국,영,수,사,과,도,한)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65 2층	02-2236-3799
4		봉천동 나눔의집	고등 주중반(국,수,사,과,한,미) 고등 주말반(수,사,과,한,미)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35	02-871-1596
5		참빛야간학교	중등 (국,영,수,도) 고등 (국,영,수,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8가길 2, 월계경로당 3층	02-916-1707
6		대신야학	중등 (국,수,영,사,과,한,도) 고등 (국,수,영,사,과,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70	02-364-1536
7		서현학교	중등 (국,영,수,사,과,도) 고등 (국,영,수,사,과,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53길 18	02-844-7035
8		성지문화원	초등 (국,수)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94번길 28	051-898-5000
9		기러기문화원	초등 (국,수,사,과,영,도,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9번길 35, 3층	051-642-1515
10		남부야학	초등 (국,수,사,과,영,도) 중등 (국,영,수,과,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9길 29	051-622-1205
11		부산 부산향토학교	중등 (국,수,사,과,영,도) 고등 (국,수,사,과,영,한,도)	부산광역시 진구 신암로9	051-412-4481
12		새마음야학	중등 (국,영,수,사,과,도) 고등 (국,영,수,사,과,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35번길 47, 2층	051-757-8434
13		부산영도구청	중등 (국,수,영,과,사,도) 고등 (국,수,영,과,사,한,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051-419-4515

연번	지역	기관명	운영 프로그램	주소	연락처
14	부산	BBS부산중 고등학교	중등 (국,영,수,사,과) 고등 (국,영,수,사,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85	051-868-6723
15		사하구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고등 (국,수,영,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161	051-207-7179
16	인천	해밀 평생교육원	중등 (국,영,수,과,한) 고등 (국,영,수,과,한)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88, 2층	032-578-3348
17	대전	대전장애인배 우터한울야학	초등 (국,수,영)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07 석봉빌딩 402호	042-488-2598
18		대전반딧불야 학교	중등 (국,영,수,사,과) 고등 (국,영,수,사,과)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길 39, 3층	042-525-9091
19	광주	사랑의배움터	초등 (국,수,실,과,사) 중등 (국,영,수,과,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33-9	062-951-5397
20	울산	울산시민학교	초등 (국,도,사,실,수,과) 중등 (국,영,수,사,과,도)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13길 39	052-292-9797
21	경기	행복드림학교	중등(국,영,수,과,사,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2번길 17-1	031-757-3095
22		안산용신학교	중등 (국,영,수,과,사) 고등 (국,수,과,사,한,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16	031-494-0675
23		사랑나무야학	중등 (국,수,사,과,영,도) 고등 (국,수,사,과,영,한,도)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47-1, 3층	031-863-1507
24		수원제일평생 학교	고등 (국,영,수,사,과,도,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4번길 38, 3층	031-222-0616
25		신갈야간학교	초등 (국,영,수,사,과,도) 중등 (국,영,수,사,과,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29-1, 2층	031-283-5566
26		청솔야간학교	고등 (국,수,영,사,과,한,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9 3층	031-753-8995

연번	지역	기관명	운영 프로그램	주소	연락처
27	경기	안양향토학교	초등 (국,영,수,사,과,도) 고등 (국,영,수,사,과,한,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4번길 50 안양2동 주민센터 3층	031-466-0364
28		파주한마음 교육관	고등 (국,수,영,한)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07 금강빌딩 402호	031-949-4727
29		여주시장애인 복지관	고등 (국,영,수,사,과,한)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05	031-883-2100
30		마부위침학당	초등 (국,수,사,과,도,실) 고등 (국,영,수,사,과,한,도)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30	010-8624-0516
31		(사)좋은 친구들	고등 (국,수,영,사) 중등 (국,수,영,사)	경기도 광명시 광화로 6 대혁빌딩 4층	02-2625-7634
32		의정부 노성 야간학교	고등 (국,영,수,사,한,과)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4번길 19	031-855-5678
33		학교밖청소년 배움공동체 디딤돌	중등 (국,영,사,과) 고등 (국,영,사,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9, 3층	031-755-4080
34	강원	횡성군청	고등 (국,수,영,사,과,국,도)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주민복지지원과	033-340-2077
35	충북	충주열린학교	고등 (국,한,수,체)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40 부용 빌딩 502호	043-852-3858
36		평생열린학교	고등 (국,영,수,사,과,도,한)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40 부용 빌딩 501호	043-856-7858
37		충주한울학교	고등 (국,영,사,과)	충청북도 충주시 교동1길 15-18 충주문해교육센터	043-848-3858
38		충주문화학교	중등 (국,영,수,사,과) 고등 (국,영,수,과,한)	충청북도 충주시 교동1길 15-18 충주문해교육센터	043-852-8913
39		증평군평생 학습관	중등 (국,영,수,사,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 증평군립도서관 3층	043-835-4623
40	전북	무궁화야학교	초등 (국,사,수,과,도,영) 고등 (국,사,수,과,도,영)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5길 68-5	063-854-8894
41		전주주부평생 학교	고등 (국,영,수,과,사,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8	063-271-6050
42		울림야학교	초등 (국,사,수,과,도,실)	전라북도 정읍시 청수3길 22-5	063-531-6737

연번	지역	기관명	운영 프로그램	주소	연락처
43	경북	상주희망학교	고등 (국,영,수,사,과,도,한)	경상북도 상주시 신서문2길 75	054-533-7490
44		경산우리학교	고등 (국,영,수,사,과,도,한)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39길 31	053-816-6059
45		한림야간 중고등학교	중등 (국,영,수,과) 고등 (국,영,수,과)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9	054-772-3956
46		구미 상록학교	중등 (국,수,영,과,사,도) 고등 (국,수,영,과,사,한,도)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82	054-457-3422

2) 학습자모집 및 상담

• 학습자모집

- 기관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과목 운영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학습자를 모집함.
- 홍보의 유형으로는 기관홍보 전단지, 부동산, 제과점 등 다양한 상점에 요청하여 부착하거나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하며, 지역신문이나 생활정보지 등 지역 언론을 통하여 홍보함. 또는 온라인상 카페, 블로그에 기관의 수업하는 사진, 과목별 합격자 목록 등을 올려 활용함.

• 상담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는 상담(counseling)을 진행함.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는 검정고시 학력 취득을 위한 과목이수 등의 학습설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실시함.

3) 기관의 주요 업무 일정

〈표 11. 주요 업무 일정 및 내용〉

주요 일정	세부 내용	일정 예시
사업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및 검정고시 관련 협업체 또는 개별기관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공고문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2018년 6월 21일(목)-2018년 7월 12일(목) 18:00까지
국고보조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제출 불가 시 내부결재 후 이메일 제출(gumsi@nile.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2018년 8월 1일(수)까지

주요 일정	세부 내용	일정 예시
국고보조금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협의체) 단위 신청기관은 지자체(협의체)를 통해 교부결정 통지 및 입금 - 개별단위 신청기관은 기관에 직접 교부결정 통지 및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결정일은 교부결정서 통지일을 기준으로 안내 - 교부총액으로 예산편성 후 1차(50%) 교부 진행, 잔액(50%)은 차후 2차 교부 실시
개설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제출 불가 시 내부결재 후 이메일 제출(gumsi@nile.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일: 2018년 9월 7일 (금)까지
직무연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검정고시 지원사업 및 운영지침 설명 - 성인학습자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특강 - 교육기관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의 시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2018년 10월 11일(목)~10월 12일(금), 1박 2일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컨설팅 및 중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2018년 10월 18일 (목) ~ 10월 31일(수)
국고보조금교부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협의체) 단위 신청기관은 지자체(협의체)를 통해 교부결정 통지 및 입금 - 개별단위 신청기관은 기관에 직접 교부결정 통지 및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결정일은 교부결정서 통지일을 기준으로 안내 - 교부총액으로 예산편성 후 1차(50%) 교부 진행, 잔액(50%)은 차후 2차 교부 실시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불 우편발송(담당자 설문지 1부 이상 및 학습자 설문지 전체 수합본) ※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문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일: 2018년 11월 23일 (금)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제출 불가 시 내부결재 후 이메일 제출(gumsi@nile.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일: 2019년 1월 18일 (금)까지
성과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 교육기관 관계자가 모여 사업성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2019년 2월 예정

다. 학사관리

1) 출석관리 지침

-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매일 단위 출결사항을 학습과정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함.
- 교·강사는 출석부에 따라 출석현황을 작성하여 학습종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교육기관은 2년간 보관함.
-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2) 학업성취도 평가·관리

- 해당 기관에서 학습자 성취도 평가·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쪽지시험, 중간·기말시험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 가능함.

3) 강의평가

-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강의평가를 실시함.
- 강의평가 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
-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개선 등에 활용함.

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국고보조금을 집행.

- 국고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필요

2)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 결제를 위한 체크카드(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3) 사업 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교부결정(사업 승인) 이후에 집행한 사업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함.

4) 예산 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예산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함.

- 당초 예산 항목 금액에서 예산 증가 금액이 20% 미만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승인 없이 조정 가능. 단, 당초 예산 항목 금액에서 예산 증가 금액이 20% 이상인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예산 항목: 인건비, 사업추진비, 경상운영비

5) 2018년 12월 31일(월)까지 사업을 종료하여야 하며, 2019년 1월 18일(금)까지 사업결과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함.

6)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변경하여 적용함(참고 참조).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 일시적 강사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2018년 4월 1일 지급분부터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됨.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분	2018년 1월~3월	2018년 4월~12월	2019년 1월 이후
지급액	25만 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소득세	0원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예시) 기타소득 금액(50,000원) = 166,666(기타소득 지급액) - 116,666(필요경비 70%)
 ☞ 원천징수세액: 0원(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분리과세 적용: 기타소득 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 필요경비율 적용: 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4~12월 지급분은 70%, 2019년 1월 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고, 검정고시 교육기관의 경우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부금(국고보조금)에서 강사료 등 지급 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경우, 2018년 4월 지급분부터 변경된 세율을 소급적용하여 관리해야 함.

4 검정고시 응시

1. 응시 자격
2. 제출 서류
3. 출제 방향
4. 응시 과목 면제
5.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사항
6. 응시자유의사항
7. 합격 통보 절차 및 합격증 발급
8. 규정 변경에 따른 합격 인정 과목

4 검정고시 응시

1. 응시자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 응시자격

-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응시자격 제한

-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 이하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함.

2) 응시자격 제한

-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재학 중인 사람(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 응시자격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응시자격 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재학 중인 사람(휴학 중인 사람 포함).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사람은 제외함.

2. 제출 서류

가. 내국인

1) 현장 접수

- 응시자 전원 제출 서류(2018년도 예시)

제출 서류
1) 응시원서(소정 서식, 접수처에서 교부) 1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cm×4.5cm, 3개월 이내 촬영) 2매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⁰⁵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 서식)
 - *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 서식)
 - *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 제출 가능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의 관리대상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소정 서식)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 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제2호 및 제9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졸업[수료, 졸업 예정]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4) 응시수수료: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음.

5)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하지는 않음)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지참
 - *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의 제출로서 3)의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성적통지서는 불가).

2) 온라인 접수

• 응시자 전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1)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관용 사진 3.5cm×4.5cm, 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매
* 100Kb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 서식)
 - *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 서식)
 - *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 제출 가능

05 최종학력증명서 발급

- 동사무소 팩스민원으로 발급 가능
- 행정실(출신교 무관 집근처 학교 가능)에서 발급 가능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의 관리대상자는 정원의 관리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 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제2호 및 제9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
 - 합격과목의 시험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졸업[수료, 졸업 예정]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 모든 서류는 jpg, gi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응시수수료: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음.

※ 응시생은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000교육청의 예)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 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소험표는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 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6.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7. 귀국재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 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000교육청의 예)

※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3) 현장·온라인 접수 추가 제출 서류

• 과목면제 대상자

해당자	제출 서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http://www.all.go.kr), 02-3780-9986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 편의 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 제공 내용	제출 서류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소정 서식] •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상지지체 장애	대필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장애인 편의 제공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 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 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단, 전산미 확인자는 별도 서류 첨부).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 서비스'를 2018년도에 시행하여 자택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함. 특수고사실 병행, 주거지 인근 고사장 선택 가능.

나. 귀국자

1) 귀국자 학력인정

•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중졸검정고시 응시자)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중학교 졸업학력 인정(고졸검정고시 응시자)

-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귀국자 학력인정 관련 제출 서류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증명서(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 서류 원본
 -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 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⁰⁶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우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영사확인⁰⁷: 외국의 문서가 우리 공문서와 동일하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주재 우리나라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주고 있음.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공증문서(관련 사이트 주소)⁰⁸
-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 서류 간소화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4982, 2014.8.22.)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 초·중·고 교육 >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확인)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협약국 주재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 확인방법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상단메뉴 '재외공관' 클릭 → 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 상단메뉴 '영사', 세부메뉴 '공증'

06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년 7월 14일에 발효된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112개국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07 www.0404.go.kr

08 www.apostille.go.kr

-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발각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 취소

〈그림 3. 귀국자 학력증명서 준비 절차〉



다. 북한이탈학생

1) 학교급별 졸업 인정

- 소학교(인민학교) 4년(1975년 이전 인민학교 포함)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 인정
- (고등)중학교 3학년(1975년 이전 고등중학교 2학년 포함) 이상 이수자 → 중학교 졸업 인정
- (고등)중학교 6학년(1975년 이전 고등중학교 5학년 포함) 이수자 또는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인정
※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침. 상급학교 진학이나 검정고시 지원 시 학력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학력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함.

2) 신청자의 연령이 한국의 동학년 연령보다 적은 경우는 불인정

- 초등학교 졸업 인정: 만 12세 이상
- 중학교 졸업 인정: 만 15세 이상
- 고등학교 졸업 인정: 만 18세 이상

3)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권 위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에 의거, 일정한 수 이상의 북한이탈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장이 신청을 할 경우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음.
- 제1항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학교는 북한이탈학생 재학생 수가 30명 이상으로 함.

4) 기타 경우

- 학력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

라. 다문화 학생

1) 학교급별 졸업 인정

- 해당 국가의 초등교육기관 이수자나 졸업자를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초등학교 졸업 인정
- 해당 국가의 전기 중등교육기관 3개 학년 이상 이수자 또는 졸업자 → 중학교 졸업 인정
- 해당 국가의 후기 중등교육기관 3개 학년 이상 이수자 또는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인정
※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침. 상급학교 진학이나 검정고시 지원 시 학력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학력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함.

2) 신청자의 연령이 한국의 동 학년 연령보다 적은 경우는 불인정

- 초등학교 졸업 인정: 만 12세 이상
- 중학교 졸업 인정: 만 15세 이상
- 고등학교 졸업 인정: 만 18세 이상

3)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권 위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에 의거, 일정한 수 이상의 다문화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장이 신청을 할 경우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음.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일정한 수(예: 10명) 이상의 다문화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음.

4) 기타 경우

- 학력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⁰⁹

가.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09 2015. 2. 2.(월), 교육부 학교정책과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사이버 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다만, 사이버 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 여부는 의견 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나. 교육부의 외국학교 학력인정 방안(2015년 2월 2일)

1)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외국 국적자: 편입학)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외국 국적자: 편입학)

3)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 국가의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해당 국가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검정고시 관련 학력인정에 관한 경우 교육감, 학교 입학에 관련된 경우 학교장)에서 최종 판단.

3. 출제 방향

가. 출제 방향 개요

- 문제은행(기출문항 포함) 출제방식을 학교급별로 차등 적용함.
 - 초졸: 50% 내외
 - 중졸: 30% 내외
 - 고졸: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함.
- 출제 난이도
 -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을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 유지

나. 출제 범위

- 초·중·고졸검정고시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함.

- 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외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초·중졸검정고시는 2013년 1월부터 문재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초졸 시험의 경우, 기출문제 영역 포함 50% 내외로 출제가 가능하고 중졸검정고시의 경우, 30% 내외로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검정고시 '사회' 과목의 경우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고졸검정고시 '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대체로 기본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 고졸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과목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졸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범위 및 대상 교과서는 다음과 같음.

구분	교과	출제 범위	대상 교과서
필수	국어	국어 I	교육부 검정(2013. 08. 30)
		국어 II	교육부 검정(2013. 08. 30)
	수학	수학 I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정(2013. 08. 30) 경기도교육감 인정(2013. 09. 04)
		수학 II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정(2013. 08. 30) 경기도교육감 인정(2013. 09. 04)
	영어	실용영어 I	경기도교육감 인정(2012. 09. 28)
	사회	사회	교육부 검정(2013. 08. 30)
	과학	과학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2011. 01. 14)
한국사	한국사	교육부 검정(2013. 08. 30)	
선택	도덕	생활과 윤리	교육부 검정(2013. 08. 30)
	기술·가정	기술·가정	충청북도교육감 인정(2013. 08. 30)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울산광역시교육감 인정(2013. 08. 30)
	음악	음악과 생활	부산광역시교육감 인정(2013. 08. 30) 경기도교육감 인정(2013. 09. 04)
	미술	미술문화	대전광역시교육감 인정(2013. 08. 30)

- 중졸검정고시는 교과별 과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고졸검정고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서 교과별로 과목이 구분되어 있음.
- 향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급에 적용될 경우 출제범위는 변경 예정

다. 출제 수준

- 출제 수준은 각 해당 학교 졸업(초졸·중졸·고졸)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임.

4. 응시 과목 면제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과목 면제

구분	해당자	응시 과목	비고
초졸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 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과목】 • 국어 • 수학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중졸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졸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 국어 • 수학 또는 영어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 수학 또는 영어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2014년 이전(2014년 포함) 고졸검정고시 선택(II) 과목 합격자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II) 과목 합격 점수를 급회 고졸검정고시 점수에 합산을 원할 시 선택(II)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고시합격을 결정한다.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신청란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평생학습계좌제 과목 이수에 따른 면제

-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 영어(단, 초등 영어는 가능), 수학을 제외한 응시과목에 대하여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과목별로 9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면제 과목

구분	과목 수	검정고시 응시 과목		계좌제 연계 면제 과목
초졸	6과목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4과목)	국어·수학을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2과목)	
중졸	6과목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5과목)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1과목)	
고졸	7과목	필수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6과목)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1과목)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https://www.all.go.kr)

• 검정고시 과목 면제 신청하기

〈그림 4. 검정고시 과목 면제 신청하기〉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https://www.all.go.kr)

5.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사항

가. 준비물

- 초졸: [필수]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선택]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 중졸 및 고졸: [필수]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선택]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나. 수험표, 주민등록증 분실자 준비 사항

- 수험표 분실자: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받기 바람.
- 주민등록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하기 바람.

다. 기타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 시험당일 시험장 운동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람.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 미비

-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나. 시험중 퇴실 금지

- 수험자는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음.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 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
-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구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함.
-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전자 담배 등 무선통신 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시험장 내에는 수험생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할 수 없음.

다. 부정행위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고시를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라. 기타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교육청별 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 과목합격자는 별도 대기실에서 대기함.
- 검정고시응시자가 퇴학자일 경우 퇴학자는 응시일로부터 대략 8개월 이전에 학교를 그만둔 상태여야 함.
- 교육기관 입학상담 시 최종학력증명서 확인 후 교육 실시.
 - 학적 정정 신청: 출신 학교에서 증명, 통·폐합된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문의·발급.

7. 합격 통보 절차 및 합격증 발급

가. 전체 과목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 취득한 자를 전체 과목 합격자로 결정함.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나. 일부 과목 합격

- 검정고시 불합격자(일부 과목 합격자) 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다음 차수의 시험부터 해당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최종 고시성적에 합산함.
-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함.
 - 고시에 합격한 자의 수험번호는 시·도의 공보 또는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재.
 - 고등기술학교 등의 졸업예정자로서 과목면제를 받아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할 때까지 최

종합격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보류함.

• 합격증서 수여

- 고시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의하여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를 교부.
- 고등기술학교 등의 졸업예정자로서 과목 면제를 받아 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교부를 보류하고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 합격으로 인정.

다. 합격 취소

- 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 학력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전 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조회 확인하고, 학력조회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함.

8. 규정 변경에 따른 합격 인정 과목¹⁰

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구분	중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개정 규정에 의한 합격 인정 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 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 합격자	기술(남)	기술·산업
	가정(여), 가사(여)	가정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 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산업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가사	가정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10 제도 변경으로 과목이나 과목명이 변경되면서 과거에 일정 기준을 넘는 점수를 받은 과목에 대해서 현행의 과목명으로 (부분)합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임.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구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 과목	개정 규정에 의한 합격 인정 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 합격자	사회	한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 I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 합격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 합격자	국어 I	국어
	사회 I, 지리 I	사회
	수학 I	수학
	생물 I, 지구과학 I, 물리 I, 화학 I	과학
	산업기술(남)	공업기술
	가정(여), 가사(여)	가정과학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 합격자	국어(상, 하)	국어
	사회(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 I (상), 과학 I (하), 과학 II (상), 과학 II (하)	과학
	영어 I	영어
	한문(상)	도덕
	교련(남, 여)	체육
	독일어	독일어 I
	프랑스어	프랑스어 I
	에스파냐어	스페인어 I
	중국어	중국어 I
	일본어	일본어 I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 합격자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과학	과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 I	음악
	미술 I	미술
	체육 I, 교련	체육
	한문 I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에스파냐어 I	스페인어 I	
2015년 2월 1일 이전 과목 합격자	국사	한국사

5 검정고시 후의 진로

1. 중등학교 진학
2. 대학 진학
3. 해외 유학

5

검정고시 후의 진로

1. 중등학교 진학

가. 상급학교 진학

- 초졸검정고시 합격 후 일반중학교, 특성화중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중학교, 각종학교 등에 진학할 수 있음.
 - 중졸검정고시 합격 후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 분야, 직업교육 분야),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에 진학할 수 있음.
- * 입학과 관련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나. 진학 시 유의사항

- 검정고시 합격 후 언제부터 다음 단계의 입학이 가능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각 학교 급의 입학기준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합격한 다음년도 3월에 입학이 가능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92조 제1항에 의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이외에 입학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 다만, 동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주5일제 수업 시 190일)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 126일의 출석일수가 필요한바, 65일이 경과한 후 입학하게 되면 진급이 불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제92조(준용) ①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 해당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해당 학교급으로 편입학이 가능한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부는 지난 2010년 8월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도 고등학교에 편입학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편입학 결정권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있으므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바 있음.

다. 중·고 진학 가능한 학교 유형

- 중학교 유형: 일반중학교, 특성화중학교
-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직업

형·대안형),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 중졸검정고시 합격자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9월과 12월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비교평가를 받아야 함.

- 기타(학력인정 기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표 11. 기타 학력인정 기관〉

구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졸업연한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서 1년 조기 졸업 가능)	2년 6학기제(고등학교) 및 3년 과정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수업방식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80%)과 면대면 출석 수업(20%)을 병행	일반적인 교과수업 및 학교 자체에서 기획한 교육과정 운영(평생교육 관련)	일반적인 교과수업과 학교 특색에 따른 특성화 교과(대안교과) 수업을 진행
입학자격	방송중: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재연령 제한 없음 방송고: 중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재연령 제한 없음	초등학교: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넘은 자 중학교: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학교 취학연령을 넘은 자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초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중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 단, 일부 학교의 경우 모집 대상 및 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상급학교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성인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참조)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성인학습자가 입학할 수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40조, 제44조, 제54조 참조)

2. 대학 진학

가.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는 대학 진학이 가능함.

- 국내 대학에 진학 시 고졸검정고시 합격생의 합격점수는 내신성적으로 환산됨.
※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변환하여 주지 않음.

나. 수시전형 대학 지원자격 (2018년 기준)

※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 여부는 아래 표의 지원 자격 참조. 세부 지원자격은 반드시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 바람.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서울	경희대	고른기회1(국가보훈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서울	경희대	고른기회1(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정원 내)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서울	경희대	고른기회2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서울	경희대	논술우수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경희대	실기우수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서울	고려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고려대	사회공헌자1	검정고시 2017년 이후 합격자에 한함
서울	고려대	사회공헌자2	검정고시 2017년 이후 합격자에 한함
서울	고려대	특기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고려대	사회배려자전형	검정고시 2017년 이후 합격자에 한함
서울	광운대	학생부종합전형(광운참빛인재)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서울	광운대	고른기회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서울	국민대	학생부종합전형(국민프런티어)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서울	국민대	어학특기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국민대	학생부종합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서울	국민대	계약학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덕성여대	논술100%전형	검정고시 합격자(여자)
서울	동국대	논술우수자전형	(외국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서울	동국대	특기자전형(문학/어학/SW/체육일반/연기/영화영상)	(외국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서울	동국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수시)	(외국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서울	동덕여대	없음	
서울	명지대	학생부교과면접	검정고시 합격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서울	명지대	국가보훈대상자	2013년 1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서울	명지대	크리스천리더	검정고시 합격자(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서울	명지대	사회적배려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서울	삼육대	예능인재 미술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상명대(서울)	학생부 교과전형/안보학전형/상명인재전형/실기우수자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서울	상명대(서울)	국가보훈대상자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상명대(서울)	농어촌학생전형/서해5도 학생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서울	상명대(서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특수교육대상자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자
서울	서강대	고른기회전형/사회통합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서강대	논술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서강대	알바트로스 창의인재	2015년 4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커뮤니케이션학부, 컴퓨터공학)
서울	서경대	일반전형 1,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서울과기대	논술위주 전형/저소득층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서울교대	기회균형선발1전형/특수교육대상자전형	2012년 4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서울	서울기독대	일반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서울대	일반전형/일반전형(미술대학 실기 포함)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서울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1(저소득가구학생/농어촌학생)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서울시립대	고른기회입학전형 1, 2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서울시립대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서울신학대	추천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서울여대	고른기회1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서울여대	논술우수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서울	서울한영대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성공회대	대한학교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성균관대	정원 내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성신여대	예체능실적우수자/일반학생 실기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그 외 모든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서울	세종대	예체능 특기자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항공시스템공학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서울	숙명여대	논술우수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숙명여대	글로벌인재	2015년 12월 1일 이후 공인외국어 성적 취득한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숙명여대	예능창의 인재(무용, 음악)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송실대	논술우수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송실대	예능우수자 인재전형(문학)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활동우수형)	검정고시 출신 제외
서울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등)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연세대	일반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연세대	특기자전형	2015년 4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
서울	연세대	고른기회전형(농어촌,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제외)	2015년 4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
서울	이화여대	고른기회전형/사회기여자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이화여대	특기자(어학, 과학, 국제학, 체육)/예체능실기전형/예체능서류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장로회신학대	검정고시출신자 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장로회신학대	그 외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중앙대	학생부종합전형 다빈치형인재/탐구형인재/SW인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중앙대	고른기회(기회균등형)-농어촌 학생/실기전형 실기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서울	중앙대	논술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서울	총신대	외국어(영어우수자)/성경지식우수자/성경경시대회 수상자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총신대	담임목사추천자/멘터추천자/자기추천자/선교사자녀/교역자자녀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총신대	다자녀가정자녀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추계예대	수상실적특기자(문학)/일반학생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KC대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한국성서대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한국외대	고른기회전형/논술전형/특기자전형(외국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한국체대	체육특기자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한국체대	교과성적우수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한국체대	경기입상실적우수자 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서울	한성대	국가보훈대상자/사회적배려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한양대	학생부종합(고른기회)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자소서를 제출받아 평가함)
서울	홍익대(서울)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서울	홍익대(서울)	논술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울	홍익대(서울)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기	가천대	적성우수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강남대	실기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강남대	취업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단국대(죽전)	논술우수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단국대(죽전)	예능특기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경기	대진대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	대진대	종단추천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	대진대	취업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6개월 이상 취업자)
경기	대진대	학생부종합전형(원원대진)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기	대진대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검정고시 출신 가능
경기	대진대	실기우수자전형	검정고시 출신 가능
경기	루터대	일반학생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	명지대(용인)	학생부교과면접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	명지대(용인)	학생부종합	검정고시 합격자(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경기	명지대(용인)	크리스천리더	검정고시 합격자(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경기	명지대(용인)	사회적배려	검정고시 합격자(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경기	명지대(용인)	실기우수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경기	명지대(용인)	체육특기자1/실기우수자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	명지대(용인)	체육특기자2, 3 / 바둑특기자 / 뮤지컬특기자	2013년 1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	서울장신대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성결대	전 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	수원 가톨릭대	수도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수원대	일반전형(적성)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	수원대	국가보훈대상자/사회배려대상자 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기	수원대	미술특기자전형/실기우수자	2013년 2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
경기	신경대	일반학생학생부/전공관련 우수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신한대	일반전형/사회기여자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신한대	국가보훈대상자 전형/교육기회균등 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경기	아세아 연합신학대	일반전형/기독교학생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아세아 연합신학대	선교사자녀 및 사회배려자/어학 특기자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기	아세아 연합신학대	만학도	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	아주대	학교생활우수자/지역인재/학생주종합전형(ACE)	검정고시 출신
경기	아주대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1, 2)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기	아주대	논술우수자	검정고시 합격자
경기	아주대	SW특기자전형/체육인재전형(축구)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기	아주대	국방IT우수자전형1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기	아주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기	안양대	면접/실기	검정고시 출신
경기	용인대	군사학과 특별전형/취업자 특별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용인대	만학도 특별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차의과대	CHA자기추천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칼빈대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칼빈대	영육아보육학과(계약학과)/아동청소년복지상담학과(계약학과)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기	평택대	PTU인재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기	평택대	그 외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한경대	국가보훈대상자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기	한경대	일반전형/체육특기자전형/잠재력 우수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한국산업 기술대	학생부종합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기	한국산업 기술대	일반전형/수학과학교과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경기	한국항공대	교과성적우수자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기	한국항공대	미래인재전형	2013년 2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
경기	한국항공대	고른기회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한국항공대	농어촌학생특별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기	한세대	일반전형/예체능우수자/예체능우수자(디자인)	검정고시 출신
경기	한세대	사회기여 및 배려자/고른기회/공연 예술특기자/특수교육대상자	검정고시 출신
경기	한신대	일반학생전형/실기/사회배려자/국가보훈대상자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
경기	한양대 (ERICA)	고른기회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한양대 (ERICA)	재능우수자(체육일반, 실용음악-보컬, 실용음악)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기	협성대	일반전형/미래역량우수자전형/국가보훈대상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인천	경인교대	교직적성잠재능력우수자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인천	경인교대	국가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인천	경인교대	저소득층학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인천	인천 가톨릭대	학생생활우수자/ICCU미래인재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인천	인천 가톨릭대	가톨릭지도자추천/수도자	검정고시 합격자
인천	인천대	INU교과전형/교과성적우수자전형/자기추천전형/실기우수자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인천	인천대	고른기회대상자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인천	인하대	평생학습자	자격요건 有
인천	인하대	논술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인천	인하대	그 외 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강원	가톨릭 관동대	교과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강원	가톨릭 관동대	실기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강원	강릉원주대	없음	
강원	강원대	특수교육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강원	경동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강원	상지대	일반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강원	연세대원주	사회공헌배려자전형/특기인재전형/EIC(동아시아국제학부)전형	2015년 4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학해당 요건 해당되는 자
강원	연세대원주	일반논술	검정고시 합격자
강원	춘천교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특수교육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강원	한라대	일반전형/융합인재	검정고시 합격자
강원	한라대	국가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강원	한림대	학생생활우수자전형/체육특기자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강원	한림대	한림케어전형/교과우수자전형/외국어특기자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
대전	대전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전	대전대	교과우수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전	대전대	고른기회전형 1,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전	대전신학대	일반학생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대전	목원대	일반학생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전	목원대	고른기회전형/사회기여자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대전	목원대	농어촌학생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대전	배재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대전	배재대	고른기회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대전	우송대	일반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
대전	우송대	잠재능력우수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전	우송대	외국어우수자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대전	을지대	교과성적우수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전	충남대	육군학/해군학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남자)
대전	충남대	저소득층학생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대전	침례신학대	기독교인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전	침례신학대	농어촌학생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대전	한남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전	한남대	국가보훈대상자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대전	한남대	한남인재전형/지역인재전형/창업인재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대전	한남대	글로벌인재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대전	한밭대	지역인재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대전	한밭대	평생학습자전형1	1988년 2월 29일 이전 출생자에 한함
대전	한밭대	농어촌학생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세종	고려대(세종)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세종	대전 가톨릭대	없음	
세종	홍익대(세종)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충청인재 선발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세종	홍익대(세종)	학생부적성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남	건양대	일반전형교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남	건양대	일반학생전형(실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남	공주교대	없음	
충남	공주대	일반학생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충남	공주대	예체능우수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충남	공주대	특기자전형(체육/미술/무용)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충남	공주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전형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충남	공주대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충남	금강대	종교단체장(주지스님)추천자전형 및 그외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남	나사렛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남	남서울대	성인친화형 만학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남	단국대천안	실기우수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남	단국대천안	특수교육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충남	백석대	일반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충남	백석대	체육특기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충남	백석대	백석인재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충남	선문대	일반학생전형(교과)	검정고시 합격자
충남	순천향대	일반학생(교과)	검정고시 합격자
충남	순천향대	일반학생(실기)	검정고시 합격자
충남	순천향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교과/종합)	검정고시 합격자
충남	중부대	학교생활우수자(충청, 고양)/학생부 우수자(충청, 고양)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남	중부대	학교생활우수자 특수체육(충청)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남	중부대	지역인재(충청)/진로개척자(충청, 고양)/국가보훈재(충청, 고양)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충남	중부대	실기위주전형(충청, 고양)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남	청운대	일반전형 1,2,3/청운리더스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충남	한국기술교대	국가보훈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충남	한국기술교대	코리아텍 일반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충남	한서대	일반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충남	호서대	면접전형/실기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
충남	호서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북	극동대	일반학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북	극동대	대학특성화인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북	꽃동네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북	세명대	일반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충북	세명대	특기자(어학)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충북	세명대	학생부종합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불가
충북	유원대	일반학생/일반학생(실용음악학과)	검정고시 합격자
충북	중원대	일반전형 1,2/실기중심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북	청주교대	고교성적우수자 전형/지역우수인재선발 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불가
충북	청주대	일반전형/예체능전형/기회균등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충북	충북대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충북	충북대	사회적배려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충북	한국교원대	정원 내 모든 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불가
충북	한국교원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
충북	한국교원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
충북	한국교통대	일반전형/사회기여 및 배려자전형/고른기회/특기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광주	광신대	기독교인재 특별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광주	광주가톨릭대	학생부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광주	광주교대	장애인대상자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
광주	광주교대	농어촌학생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광주	광주대	일반학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광주	광주대	학생부종합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광주	광주여대	일반학생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광주	남부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광주	송원대	일반전형/일반전형(실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광주	전남대	전 전형(일부 제외)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불가
광주	전남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광주	전남대	장애인 대상 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광주	조선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광주	조선대	평생학습자전형	만 30세 이상 평생학습자(2017년 9월 15일 기준)
광주	조선대	학생부종합 일반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광주	조선대	실기/특기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광주	호남대	일반학생전형/전공우수자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가능
광주	호남신학대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남	동신대	일반전형(학생부교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남	동신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남	목포가톨릭대	일반학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전남	목포대	학생부교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남	목포대	고른기회 1,2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전남	목포해양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정원 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남	세한대	일반학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남	순천대	성인학습자 등 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
전남	순천대	학생부성적우수자 전형/실기성적 우수자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
전남	영산선학대	전 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
전남	초당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남	한려대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북	군산대	없음	
전북	예수대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북	예원예술대	전 전형	검정고시 출신자(음악실기 우수자-대학요구 조건 해당자)
전북	우석대	종합일반/지역인재	검정고시 합격자
전북	우석대	교과일반/실기일반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불가
전북	원광대	일반전형/실기/미술,음악,체육 특기자	검정고시 합격자
전북	전북대	전 전형(일부 제외)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불가
전북	전북대	기회균형선발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전북	전주교대	고교성적우수자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불가
전북	전주교대	소년소녀가장	2017년 2월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
전북	전주대	고른기회 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북	전주대	일반학생(학생부교과)/실기위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북	전주대	기회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전북	한일장신대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북	호원대	일반전형/국가보훈대상자/검정고시합격자/검정고시출신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대구	경북대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구	경북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구	경북대	영농창업인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구	경북대	논술(AAT)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구	경북대	실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구	경북대	SW특별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구	계명대	교과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구	계명대	예체능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자격요건 有]
대구	계명대	특기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자격요건 有]
대구	계명대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대구	계명대	지역인재종합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대구	계명대	고른기회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자격요건 有]
대구	대구교대	없음	
경북	경운대	체육실적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경일대	일반전형	검정고시 출신
경북	경일대	면접전형	검정고시 출신
경북	경일대	지역인재 면접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경북	경일대	학생부종합전형	검정고시 출신
경북	경일대	실기전형	검정고시 출신
경북	경일대	지역인재 실기전형	검정고시 출신
경북	경일대	성인학습자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경주대	일반학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금오공대	학생부교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금오공대	기회균등할당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김천대	일반교과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김천대	일반면접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대구 가톨릭대	면접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대구대	학생부면접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대구대	학생부교과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대구대	학생부종합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대구대	예체능실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대구예대	일반전형 1,2	검정고시 합격자
경북	대구예대	추천자특별전형	추천요건 해당자
경북	대구한의대	일반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대신대	일반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북	대신대	고른기회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북	동국대(경주)	교과전형-의예과제외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동국대(경주)	면접(수능 최저미적용/수능 최저적용)-의예과 제외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경북	동국대(경주)	참사랑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동국대(경주)	불교추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동양대	학생부교과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북	동양대	학생부면접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북	동양대	DYU인재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북	동양대	예술인재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북	안동대	일반학생/사회통합전형/실기우수자/학과특성화전형	검정고시 합격자(학생부 없거나 학생부만으로 과목별 석차 등급 산출할 수 없는자 지원불가)
경북	영남대	일반전형/면접전형/잠재능력우수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북	영남대	공군조종장학생/육군군장학생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북	영남대	사회기여배려자 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북	영남대	무용특기자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북	영남신학대	전 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북	위덕대	전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포항공대	일반전형/창의IT인재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북	한동대	학생부종합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북	한동대	일반학생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북	한동대	대안학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북	한동대	농어촌학생전형	검정고시 출신 학생제외
경북	한동대	기초생활수급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부산	경성대	실기특별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부산	경성대	외국어특별전형	검정고시 합격자(영어영문/중국어학과는 자격요건 有)
부산	경성대	체육특기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부산	고신대	코람데오특별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부산	고신대	대안학교특별전형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
부산	고신대	일반고특별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부산	고신대	사회배려자특별전형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
부산	동명대	일반고출신자전형/일반고교과전형	검정고시 출신자(간호학과 지원불가)
부산	동명대	실기	검정고시 출신자
부산	동명대	고른기회전형	검정고시 합격자(자격요건 有)
부산	동서대	일반계고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부산	동아대	사회배려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자격요건 有)
부산	동아대	예능우수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부산	동의대	일반고교과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부산	동의대	실기우수자	검정고시 합격자
부산	부경대	나눔인재/키움인재/미래인재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부산	부산 가톨릭대	자기추천/성직자/고른기회대상자 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부산	부산교대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부산	부산대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부산	부산대	실기전형(일반학생)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부산	부산대	체육특기자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부산	부산대	고른기회전형(특수교육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부산	부산외대	학생부교과/글로벌인재/외국어능 력우수자	검정고시 합격자
부산	신라대	일반고 면접/교과/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
부산	신라대	실기우수자	검정고시 출신
부산	한국해양대	전 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울산	울산대	학생부교과/학생부면접전형/논술 전형/예체능전형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경남	가야대	일반학생전형	검정고시 출신
경남	경남과기대	일반전형	검정고시 출신
경남	경남과기대	일반전형(텍스타일디자인학과)	검정고시 출신
경남	경남과기대	동반성장전형	검정고시 출신
경남	경남과기대	학생생활우수자전형 (검정고시 출신)	검정고시 출신
경남	경남과기대	학생생활우수자전형(야간)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남	경남과기대	특별전형	검정고시 출신이 가능하나 해당 요건 참고
경남	경남대	군사학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남	경남대	사회배려자전형	검정고시 출신이 가능하나 해당 요건 참고
경남	경남대	체육특기자	원서접수일 현재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재대학에서 제시한 자격요건 有)
경남	경남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급여수 급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남	경상대	고등학교졸(취업특별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남	경상대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정원 외)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경남	경상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 외)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남	부산장신대	일반전형/추천자	검정고시 출신
경남	영산대	일반고 면접전형/일반고교과전형/ 사회배려자 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남	영산대	자기추천자	검정고시 출신 제외
경남	영산대	체육재능보유자 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남	영산대	성인학습자전형	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경남	인제대	학생부교과	검정고시 합격자
경남	인제대	의예/간호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경남	진주교대	기회균등선발/특수교육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경남	창신대	추천자전형/실기우수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	대학명	전형명	지원자격
경남	창원대	학업성적우수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경남	창원대	특기자전형	대학해당요건 해당되는 자
경남	창원대	국가보훈자전형/다문화가정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경남	창원대	기회균등선발전형/특수교육대상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경남	한국국제대	기타교전형/기타고교(면접)/실기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제주	제주국제대	대학독자전형	검정고시 합격자
제주	제주대	일반학생1/일반학생1(음악학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자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주	제주대	지역통합전형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제주	제주대	예체능특기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일 이전 3년 이내 입상실적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주	제주대	일반학생2	검정고시 출신 지원불가

3. 해외 유학

-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기 바람.
 - 해외 유학은 앞서 설명한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와 함께 고졸검정고시 합격생들의 또 다른 인생 진로의 선택지이기도 함.
- 원칙적으로 고졸검정고시 합격생들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학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국가로의 유학이 기본적으로 가능함.
 - 성공적인 해외 유학을 위해서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함. 고졸검정고시 합격생 별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표준점수 그리고 희망하는 학교 및 전공이 요구하는 자격의 도달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목표 대학과 전공을 설정하는 것이 좋음.
 - 국가마다 입학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격 또는 전형자료가 상이하므로 해외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희망 국가 그리고 원하는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 소개 자료를 상세히 확인해야 함.
 - 국가마다 교육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으로의 입학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평생교육제도 안내

1. 평생학습계좌제
2. 학점은행제
3. 독학학위제
4. 대학평생교육 지원
5.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6.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7. 내일배움카드제

6

평생교육제도¹¹ 안내

1. 평생학습계좌제¹²

가. 평생학습계좌제란?

-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학력, 경력, 자격사항, 평생학습 이력 등)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임. “계좌”의 의미는 은행에서 입·출금을 위해 개설하는 통장 “계좌”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학습이력을 온라인 공간에 차곡차곡 누적하는 의미의 “가상계좌” 개념으로의 “학습계좌”임.

나. 이용 대상

- 평생학습계좌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원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함. 단,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활용 가능함.

다. 학습이력 등록·관리 방법

- 자신의 학습이력을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은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https://www.all.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자신이 참여한 다양한 학습이력을 등록함. 학습경험을 기록·누적한 개인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학습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설계가 가능함.

라. 활용 안내

- 개인이 온라인상에 기록한 학습이력은 내용에 따라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력(성인학습자 초등학력 인정, 중졸·고졸검정고시, 방송통신고 이수단위제 등)인정, 자격취득, 취업 및 고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마. 문의처: 평생학습계좌제 상담센터

- 전화: 02) 3780-9986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여러 가지 평생교육제도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본장에서 소개되는 평생교육제도로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가 있고, 평생교육 사업으로 대학평생교육지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평생교육바우처지원이 있음.

12 <http://www.all.go.kr>

- 이메일: all@nile.or.kr
- 홈페이지: www.all.go.kr

2. 학점은행제¹³

가.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학사 또는 전문학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여,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나. 이용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음.

〈그림 5. 학점은행제 이용 사례〉



13 www.cb.or.kr

다. 신청 방법

학습자 등록 (1,4,7,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 최소 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할 것. •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학점 취득(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 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학점원(6가지):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학점인정 신청(1,4,7,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수업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 취득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
학점인정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
학점 인정 처리결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학위 신청(매년 2월,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 시 학위 취득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신청기간 및 방법 해당 대학으로 문의 • 학위 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학위 수여(매년 2월,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8월 학위 수여 실시(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 번만 개최)

라. 활용 안내

- 취득 가능 자격
 -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급
 - 평생교육사 2,3급
 - 건강가정사

- 2급 정사서
- 이·미용사
- 한국어 교원 2급
- 청소년지도사 2,3급(필기시험 면제)
- 문화예술교육사 2급
- 응시 가능 시험
 - 국가기술자격 시험
 - 독학학위제 시험
 - 공인회계사 시험
 - 편입학 시험
 - 대학원 입학 시험

마. 문의처: 학점은행제 상담센터

- 전화: 1600-0400
- 이메일: nilecb@nile.or.kr
- 홈페이지: www.cb.or.kr

3. 독학학위제¹⁴

가. 독학학위제란?

-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제도임.
-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며,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제도임.
- 고졸 학력취득자가 독학을 한 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음.

나. 이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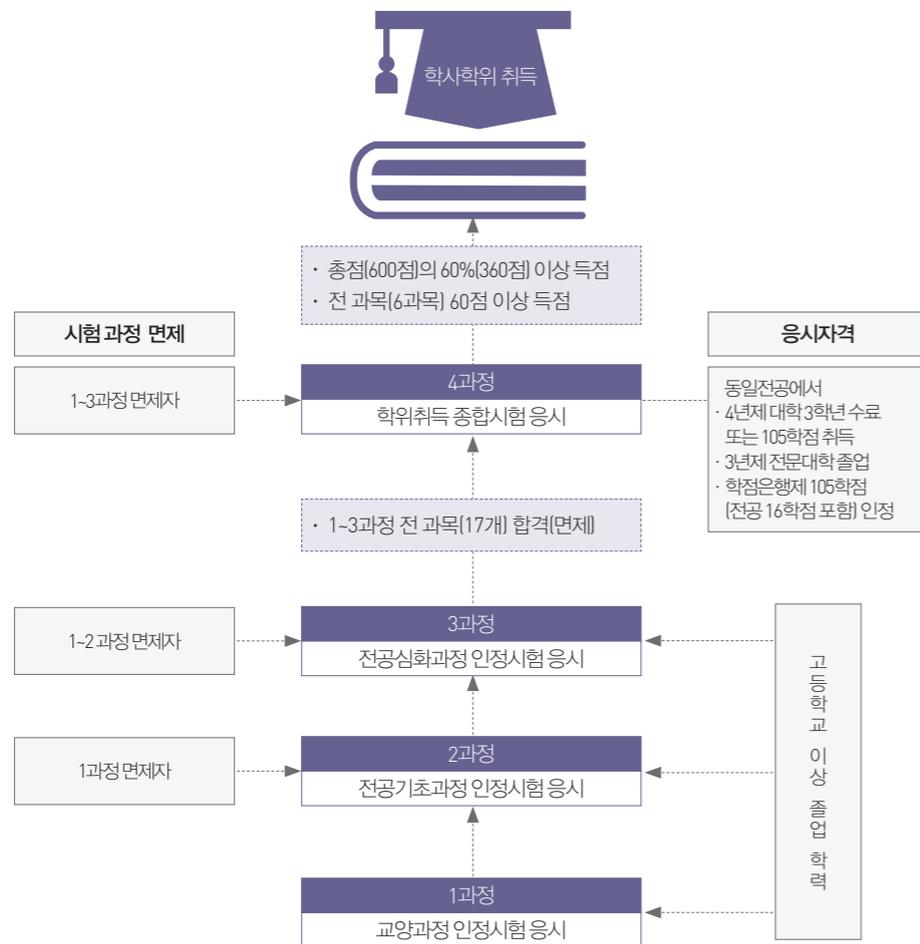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은 누구나 독학학위제를 이용할 수 있음.

14 <http://bdes.nile.or.kr>

다. 시험 응시 자격 및 학위취득 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5.03.27)에 따라 2016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1~3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함. 단,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3과정 시험에 모두 합격(면제)하거나, 학위취득 종합시험 응시 자격에 충족해야 함.

〈그림 6. 학위취득 과정도〉



* 출처: 국가평생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s://bdes.nile.or.kr>)

라. 활용 안내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면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시험 합격(면제) 과정	학점인정 기준
교양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학위취득 종합시험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를 위하여 학점이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전공별(주로 경영학) 1과정~4과정 중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이수 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대학원 입학자격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아 대학원 입학이 가능함. 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별도의 자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입학관리처로 문의하여야 함.

마. 문의처: 독학학위제 상담센터

- 전화: 1600-0400
- 이메일: bdes@nile.or.kr
- 홈페이지: <https://bdes.nile.or.kr>

4. 대학평생교육 지원¹⁵

가. 대학평생교육 지원이란?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대학이 성인 전담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성인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입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위취득 및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함.

나. 신청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대학원 대학 등은 제외)
- 분교의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신청 가능
- 목적과 주요 내용이 상이한 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다. 운영 모델

- 대학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 체계 마련을 위해 단과대학형, 학부형, 학과형 등 운영 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학위과정을 필수로 운영함.

〈그림 7. 운영 모델〉

단과대학	·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단과대학 구성 · 단과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별도의 행정기관 설치
학부	· 성인학습자 대상 전공(학과)으로 이루어진 학부 설정 - 학부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고, 전공탐색 후 전공 설정 - 별도의 단과대학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단과대학에 학부 설정 · 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마련
학과	· 기존 단과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를 설치 · 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마련
컨소시엄	· 복수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 학위 수여 가능

- 대학평생교육 지원사업 대학 현황(2018년)
 - 학부 및 학과형: 경희대, 가톨릭관동대, 경상대, 경일대, 동덕여대, 대구한의대, 순천대, 아주대(8개교)
 - 단과대학형: 동국대, 동서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서원대, 영산대, 제주대, 조선대, 창원대, 청운대, 한밭대, 한성대(13개교)

라.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등·직업교육실

- 전화: 02) 3780-9927
- 홈페이지: <https://univ.nile.or.kr/>

5. 국가평생학습 포털 ‘늘배움’¹⁶

가. 늘배움이란?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평생학습 종합 포털”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졌으며, ‘국가평생학습 정보 포털’로 거듭나기 위하여 평생학습의 공개·공유문화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이용 대상

- 국가평생학습 포털 ‘늘배움’에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로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다. 활용 안내

- 무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모바일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온라인 강좌를 시청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지역 정보 제공: ‘우리동네 배움터’를 통하여 내 주변의 평생교육시설정보를 제공함.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과 연계하여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강좌를 이용할 수 있음.
 -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나만의 강좌 찾기, 관심 강좌 등록, 학습이력 관리 등의 맞춤형 학습 기능을 제공함. 학습이력이 모이면, ‘평생학습계좌제’ 연동으로 학습이력을 관리할 수 있음.
- *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습자들과 검정고시 초·중·고졸 학력취득자들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사용하여 배움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됨.

라.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플랫폼 운영실

- 전화: 02) 3780-9864
- 홈페이지: <https://www.lifelongedu.go.kr/>

6. 평생교육바우처 지원¹⁷

가. 평생교육바우처란?

-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임.

나. 신청 자격

- 만 19세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있음. 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을 받는 자는 바우처 신청 불가.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확인 자격 및 증명서

구분	자격명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근로자확인서 발급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다. 지원 내용

- 선발 인원: 5,000여 명 내외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35만 원
 - 지원횟수: 연 1회
 - 지원강좌: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분에 한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

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index.do>)를 통해서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까운 평생교육기관 방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서
- 학습계획서(선택사항): 예산 지원 가능 범위를 넘어 신청자가 있을 경우 작성자우선 선발 예정
- 자격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해당)

• 신청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명 통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 선정된 이용자는 카드 발급을 위해 NH농협체크카드 발급 신청 필요, 카드사용 시작일은 별도 공지

마. 사용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 발급 신청 필수(NH농협은행 지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card.nonghyup.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차년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 이용 가능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평생교육기관 안내 <https://www.lllcard.kr/guide/useEdu.do>)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

• 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 기관 결제 시 바우처 한도 자동 점검
- 온라인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수강료 이외에 재료비, 책값 등 부대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이용 절차

- ① 바우처 신청 → ② 자격 심사 → ③ 이용자 선정 → ④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 ⑤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검색 → ⑥ 강좌 신청 및 수강 → ⑦ 수강결과 확인 → ⑧ 이용 완료

바. 문의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 전화: 1600-3005
- 이메일: lllcard@nile.or.kr
- 홈페이지: <https://www.lllcard.kr/>

7. 내일배움카드제

가. 내일배움카드제란?

-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 개발 계좌를 발급하여 동 계좌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훈련기관과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임.

나. 이용 대상

-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 한 실업자 중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연간 매출액 8,000만 원(임대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쿠팡 서비스 기사(전속)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되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
-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 등록을 한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 중에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 등록을 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역예정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다.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한도: 200만 원(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 전 최대 2회)
- 훈련비의 50~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지원 한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취업성공패키지II의 경우 직종에 따라 10~30%를 본인이 부담
- 자비부담금 면제 대상자 기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참가자, 희망리본(성과중심 자활사업)의 참여자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여성 가장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및 지정한 계좌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해당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운전 및 운송, 화학, 건설, 섬유 및 의복, 기계,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재료, 농림어업 관련 직업)
- 공급과잉 훈련 분야
 - 훈련비: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 부담
 - 적용 대상: 2013년 1월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주방장 및 조리사(131), 디자이너(085),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 훈련 과정
 -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계좌적합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s List) 중에서 선택
- 내일배움카드제 인터넷 훈련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지원 내용
내일배움카드제	일반 실업자	훈련비의 20~80% 지원
취업성공패키지I	· 만 18~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	훈련비의 90~100% 지원
취업성공패키지II	· (청년층)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친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니트족 NEET), 영세 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중장년층) 35~64세 이하로서,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 영세 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훈련비의 50~90% 지원

라. 훈련참여 절차

- 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② 구직 등록 교육 동영상 시청 훈련 과정 탐색 → ③ 훈련 상담 → ④ 개인훈련 계획서 작성 → ⑤ 내일배움카드 발급 → ⑥ 카드 발급(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⑦ 내일배움카드 수령 → ⑧ 수강 신청 → ⑨ 자비부담액 결제 → ⑩ 훈련 수강

마. 문의처: 내일배움카드제 상담센터

- 전화: 02) 2038-0024
- 이메일: nurijob@kodica.or.kr
- 홈페이지: <https://www.nurijob.co.kr>

참고 평생교육제도 문의처

제도명	홈페이지 URL	대표전화
평생학습계좌제	www.all.go.kr	02) 3780-9986
학점은행제	www.cb.or.kr	1600-0400
독학학위제	https://bdes.nile.or.kr	1600-0400
대학평생교육 지원	https://univ.nile.or.kr	02) 3780-9927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http://www.lifelongedu.go.kr	02) 3780-9864
평생교육바우처	https://www.lllcard.kr	1600-3005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https://www.nurijob.co.kr	02) 2038-0024

 부록

1. 검정고시 관련 법령
2. 검정고시 학습자의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신청
3. 검정고시 Q&A
4. 검정고시 지진 및 화재 대처 행동 요령
5. 타 부처의 검정고시 관련 프로그램
6. 검정고시 응시자의 제출 서류(서식)
7. 검정고시 교육기관 활용 양식
8. 검정고시 통합상담센터
참고 문헌

부록

1. 검정고시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 개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 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신설 2015. 3. 27.>

[본조 신설 2012. 1. 26.]

제43조(입학 자격 등)

-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4조(고등공민학교)

-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7조(입학 자격 등)

-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4조(고등기술학교)

-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 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3.21.]

제60조(각종학교)

- ①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 개정 2012.3.21.]

제60조의2(외국인학교)

-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 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2.3.21.]

제60조의3(대안학교)

-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 4부터 제30조의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 [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일부 개정]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회(이하 “학력심의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 대상자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목 개정 2017. 11. 28.]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 9. 29., 2007. 6. 28., 2008. 2. 22., 2009. 11. 5., 2010. 6. 29.,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7. 11. 28.>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제9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회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 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15.>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4. 2. 17., 2005. 9. 29., 2007. 4. 12., 2007. 6. 28., 2008. 2. 22., 2009. 11. 5., 2010. 6. 29.,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7. 11. 28.>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회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5. 9. 15.>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4. 2. 17., 2005. 9. 29., 2007. 4. 12., 2007. 6. 28., 2008. 2. 22., 2008. 11. 5., 2008. 12. 12., 2008. 12. 31., 2009. 11. 5., 2010. 6. 29., 2013. 3. 23.,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5. 9. 25., 2017. 11. 28.>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회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 과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 과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 과정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0. 30., 2017. 11. 28.>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3. 제2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 전문가 및 학력 평가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10. 30. 2017. 11. 28.>
-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0. 30.>
1. 북한이탈주민 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 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대상·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8.>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 [본조 신설 2008. 2. 22.]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① 제96조 제1항 제2호,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제98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 등(제9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7. 11. 28.>
-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본조 신설 2008. 2. 22.]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본조 신설 2010. 2. 26.]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 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 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 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 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 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 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 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 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 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 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 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 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 1922년 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1922년 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여과 제3학년 졸업자
4. 1922년 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 1924년 이전의 각 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 1944년 이전의 중학교·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 1949년 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16년 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 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 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 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 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 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 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 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 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4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5. 1. 6., 2017. 5. 8., 2017. 6. 20.>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15. 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98조 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본조 신설 2013. 2. 15.]

[제목 개정 2017. 3. 27.]

[제10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의 3은 제106조의4로 이동 <2017. 5. 8.>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1.] [교육부령 제148호, 2018. 2. 26., 일부 개정]

제26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초졸검정고시”라 한다),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한다) 및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검정고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9. 25.>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9. 25.>

1.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의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및 검정고시의 시행
2. 출제, 채점 및 합격증 발급

3. 그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 접수, 그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험과목)

- ① 초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5. 9. 25.>
- ② 중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9. 25.>
-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9. 25.>

제34조(시험방법 등)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 1. 초졸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 2. 중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 3.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전문 개정 2015. 9. 25.]

제35조(응시 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 1.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5. 9. 25.>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영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3.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4.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 1.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36조(응시원서 등)

-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5., 2017. 12. 1.>
 - 1. 응시자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 2.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 3.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 ③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7. 12. 1.>
 -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 2. 응시자 사진 2장
 - 3. 제3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 4.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 ④ 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 ⑤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제37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7. 12. 1.>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한다) 1부
 2. 응시자 사진 2장
 3. 제37조 제3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4.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3호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제4호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017. 12. 1.>
 1. 주민등록표 초본
 2. 장애인증명서(제35조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제37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 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 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신설 2015. 9. 25.>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 제2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 9. 25.>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 제3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 9. 25.>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 등”이라 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제외한 과목
 2.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수학·제외한 과목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5. 고등기술학교 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 과목

제38조(합격 결정 등)

- ①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②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한다.
- ③ 2015년 이전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고졸검정고시 합격 결정을 위한 성적산정에 선택Ⅱ 과목 성적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 결정을 위한 성적을 산정한다.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

- ① 초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별지 제5호의3 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5호의5 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 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9.25.>
- ②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 ③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38조 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

지 제16호 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 ④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목 면제를 받아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9.25.>
- ⑤ 고등기술학교 등의 졸업예정자로서 제37조 제3항에 따라 과목 면제를 받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한 과목에 대한 과목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9.25.>
- ⑥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 중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개정 2015.9.25.>
- ⑦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수험번호는 시·도의 공보 또는 시·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 <개정 2015.9.25.>
- ⑧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전 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 이내에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⑨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학력 조회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거짓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검정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②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 후 제1항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명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41조(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 ①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은 합격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합격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改名)을 이유로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 ①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3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 ① 제36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제44조(대장의 비치)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1호의3 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검정고시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15.9.25.]

■ 평생교육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160호, 2016. 5. 29., 일부 개정]

제23조(학습계좌)

-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제31조(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 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 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 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제목 개정 2014.1.28.]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 신설 2016. 2. 3.]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제목 개정 2014.1.28.]

제40조의2(문해교육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정보 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 신설 2016. 2. 3.]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1. 각급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 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 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③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 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58호, 2018. 2. 20., 일부 개정]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⑥ 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3.3.23.>

제27조(학력인정 시설의 지정 기준)

- ① 법 제3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 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2016.3.25.>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졸업

- 7. 시설·설비
- 8. 교과서·교재
- 9. 재무·회계 규칙
- ② 제1항 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 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 ③ 제1항 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27조 제2항 제1호, 적용 2011.2.15.부터]

제68조(문자 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지정)

- ① 교육감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문자 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 ②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절차)

-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목 개정 2014. 6. 30.]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등)

- ①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14.6.30.)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목 개정 2014.6.30.]

제75조의2(문해교육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2. 문해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4. 문해교육 대상자와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그밖에 특기할 사항
 5. 문해교육 교원과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및 그밖에 특기할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문해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8. 2.]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일부 개정]

제4조(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그밖에 특기할 사항

제2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절차)

- ① 영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 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교육과정 이수내역서
 2. 그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 ③ 영 제74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제목 개정 2014.7.28.]

제23조의2(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 절차)

- ① 영 제75조 제3항에 따라 학습 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이수 내용이 영 제74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본조 신설 2011.1.27.] [제목 개정 2014.7.2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8. 5. 22.] [법률 제15367호, 2018. 2. 21., 일부 개정]

제3조(의무교육 등)

- 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 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74호, 2016. 7. 26., 일부 개정]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검정고시 학습자의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신청

가. 검정고시 정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 세부 절차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검정고시” 메뉴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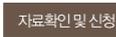


- 본인의 고졸검정고시 합격정보가 있는 해당 시·도교육청(예: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클릭

<p>시도교육청 선택</p> <p>원하시는 지역의 교육청을 선택해주세요.</p>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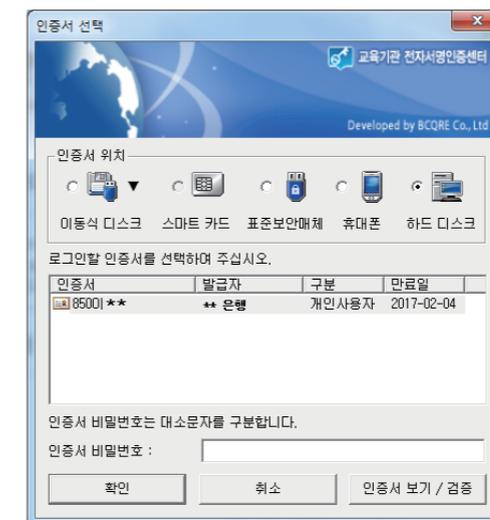
- “대입전형자료” 메뉴를 클릭()한다.



- “자료확인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식별번호 처리 동의 에 체크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도장을 지참해 현재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자료확인 및 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합격년도를 확인하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자료의 “합격증 번호” 텍스트를 클릭(예: 2015-1-3-A00-00001)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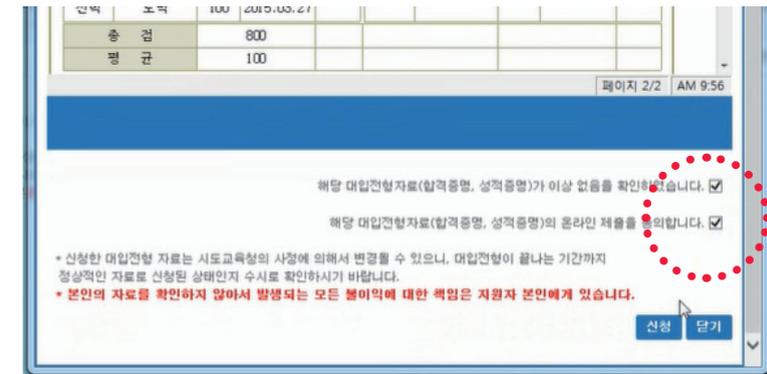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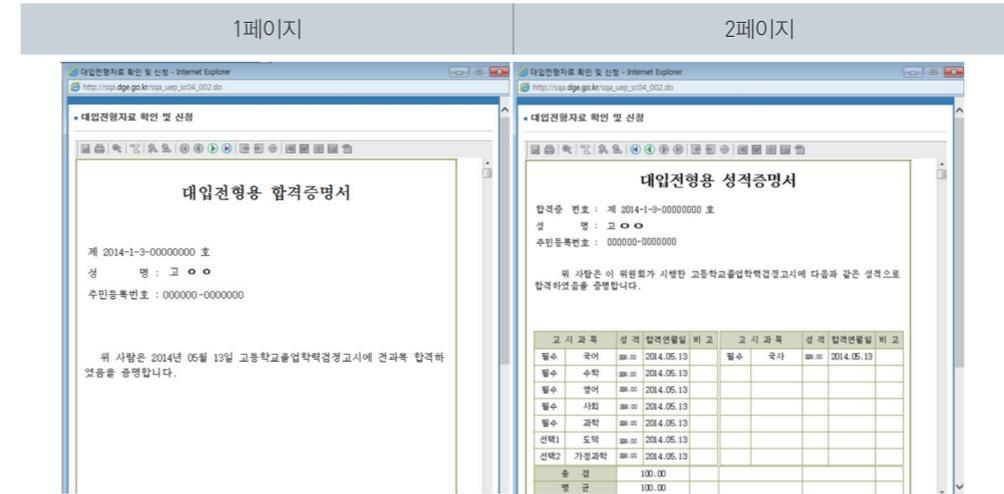
1) 1개 시·도교육청에 2개 이상의 합격정보가 있을 경우

- (예) A교육청에 총 3번의 합격정보(2012년 2회차, 2013년 1회차, 2015년 1회차)가 있고, 이 중 2012년 2회차는 ‘가’ 대학에, 2015년 1회차는 ‘나’ 대학에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2013년 1회차는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지 않음)
- **자료확인 및 신청** 화면에서 2012년 2회차의 합격증 번호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2015년 1회차의 합격증 번호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함.
- 2013년 1회차는 확인하지 않음, 대학입학원서 작성 시 합격년도와 합격회차를 ‘가’ 대학은 2012년 2회차로, ‘나’ 대학은 2015년 1회차로 기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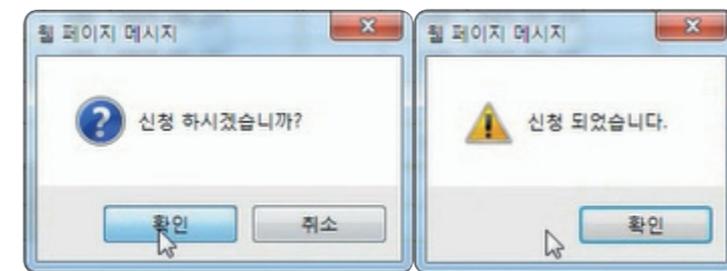
2) 서로 다른 교육청에 고졸검정고시 합격정보가 있는 경우

- (예1) A교육청에 2012년 1회차, B교육청에 2014년 2회차 합격정보 중 B교육청 합격정보만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 B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제공 서비스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료확인 및 신청** 화면에서 2014년 2회차의 합격증 번호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함.
- A교육청 자료는 미신청했으므로 대학에 온라인 제공되지 않으며, 대학입학원서 작성 시 B교육청의 합격년도와 합격회차를 ‘가’ 대학 입학원서에 2014년 2회차로 기입함
- (예2) A교육청에 2012년 1회차, B교육청에 2014년 2회차 합격정보 둘 다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 A교육청과 B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제공 서비스로 각각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료확인 및 신청** 화면에서 교육청 각각의 합격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함.
- 대학 입학원서 작성 시 해당 대학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합격정보를 기입함.

- 팝업창의 합격증명서(1페이지), 성적증명서(2페이지)가 나오면 본인의 합격년도/회차 및 성적정보가 올바른 지를 확인하고 하단에 동의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신청**)한다.



- 신청 “확인” 버튼을 각각 클릭(**확인**)한다.



- 신청 완료 후 “제출현황 조회” 메뉴(제출현황 조회)에서 신청한 내역(“제출동의 확인번호”)을 확인한다.
- 제출동의 확인번호: 수험생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의 온라인 제공 신청을 완료하면 생성되는 번호로 대학 지원 입학원서 작성 시에 기재하는 번호이므로 본인아 속지하고 있어야 함(제출동의 확인번호 첫 번째 영문 알파벳은 대문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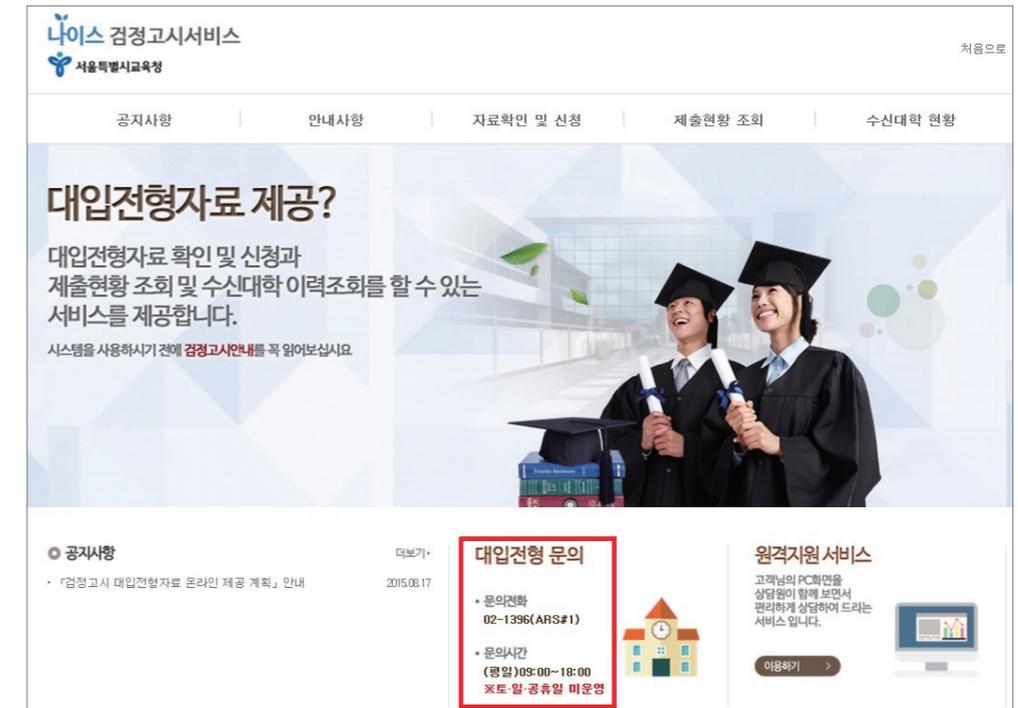
나.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수신 대학 확인 방법

- ‘검정고시 정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 세부 절차’의 1~4번 절차와 동일하게 클릭한다.
- “수신대학 현황” 메뉴(수신대학 현황)에서 대입전형자료를 수신한 대학 현황을 확인한다.



다.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전화 확인 방법

- 검정고시 정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 세부 절차’의 1~4번 절차와 동일하게 클릭한다.
- 빨간색 테두리 안의 연락처(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함)를 확인 후 문의한다.



3. 검정고시 Q & A

가. 응시 관련

Q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나요?

A 현재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35조(응시자격)에 의거, 정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그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정고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학력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예외적, 보충적 성격의 학력인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규학교 재학생 등의 검정고시 응시 증기를 줄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Q 검정고시 합격자가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에 따르면 검정고시 합격자가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재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 검정고시 합격자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92조에 의거, 중·고등학교 학생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재·편입학과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감이 연도별로 전·편입학 시행계획 등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편입학 제출 서류 및 학교별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Q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까?

A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동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지만,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51조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로, 동령 제6조(학력인정)에 의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Q 고등학교 퇴학 후,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까?

A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5항에 따라 부여되나,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6항 제2호에 따라 퇴학일로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

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응시자격이 부여되기 전까지 초·중·고졸검정고시 모두 별도로 정해진 일정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검정고시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인정시험을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고자 운영되는 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년 8월)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내신관리를 위하여 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졸검정고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검정고시제도 취지에 벗어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처럼, 6개월 경과 규정 설정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졸검정고시의 공고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검정고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학력인정

Q 검정고시 합격이 외국에서 학력으로 인정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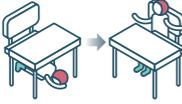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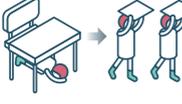
A 검정고시는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시·도교육청별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 및 합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검정고시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합격증서, 합격증명서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합격증서의 수여 등) 및 별지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해당 증서(증명서)에는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 및 대학도 해당 국가 및 대학이 정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입학자격을 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해당 학교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검정고시 지진 및 화재 대처 행동 요령

가. 지진 대처 행동 요령

- 지진 대처 단계, 상황 및 대처 가이드라인

대처 단계	상황	대처 가이드라인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	중단 없이 시험 계속 원칙
	진동이 느껴지거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①시험 일시 중지 → ②책상 아래로 대피 → ③상황 확인 → ④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험 재개 원칙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	①시험 일시 중지 → ②책상 아래로 대피 → ③상황 확인 → ④교실밖(운동장)으로 대피 원칙

- 위 안내된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은 시험실 및 시험장의 피해 정도, 수험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함.
 - “나 단계”에 해당할지라도, 유리창 파손 등 피해 상황이 상당할 경우에는 시험을 재개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음.
 - “다 단계”에 해당할지라도, 시험장 및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을 재개할 수도 있음.
 - “다 단계”의 경우 학생들은 감독관의 지휘 아래 대처하고, 책임자는 기상청으로부터 대처단계를 통보받아 다음 단계 여부를 결정함.
 - 시험이 재개될 경우, 시간은 10분 내외로 응시생 안정시간을 고려해 정함. 재개 후 조정된 시험 시간은 감독관이 칠판에 판서하고 이 과정 중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은 지시한대로 착석해야 함.
 - 만약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할 경우, 감독관 관리하에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가능함. 그러나 상황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됨.
- 수험생은 진동을 감지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관리본부의 방송 및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함.

나. 화재 대처 행동 요령

- 수험생은 화재를 감지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관리본부의 방송 및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함.
- 수험생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시험관리본부의 방송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장별 대피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함.

5. 타 부처의 검정고시 관련 프로그램

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대상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꿈드림

1) 꿈드림이란?

-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드림은 ‘꿈’과 ‘드림’의 합성어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뜻임.

2)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 공부를 원하는 경우 기초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1:1 멘토 수업, 인터넷 강의지원, 교재 등을 지원.

3) 신청 방법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꿈드림 페이스북(www.facebook.com/kdream1388)을 통해 참여 신청 → 초기 상담 → 교육지원 신청

나. 육군의 사병 대상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

1) 육군에서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서 사병들 중에서 선발하여 고입·고졸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2) 검정고시반 운영 성과

- 육군본부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 교재와 학습 동영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학습 교재 지원
 - 학습 동영상을 인트라넷과 인터넷에 탑재
 - 동료 장병에게 학습 도우미 역할 부여
- 이를 위해 검정고시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험 전 과목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지원받아 인터넷(나라사랑 포털 사이트)과 인트라넷(정보 포털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상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합격자들은 고졸학력을 취득한 성취감과 함께 전역 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고, 직업 선택, 대학 진학 등 새로운 목적을 갖는 인생의 전환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아전부대에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입학식 행사를 함으로써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 합격생들에게는 고등학교 명예 졸업식을 통해 부대를 사랑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도군단 충의고 등 22개 군내 고등학교 운영

6. 검정고시 응시자의 제출 서류(서식)

서식1

발급번호 제 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정원외관리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진학사항: 미진학 ()

진 학 ()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학교전화	(지역번호 :)		-	

년 월 일

○ ○ ○ 학교장 (직인)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 관련 대장 등의 정정 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2017년 12월 8일(공고일 기준) 이후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는 2018년 제2회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초·중학교에서 2018년 6월 8일(공고일 기준) 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18년 제2회 초졸·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나이스 제적증명서로 대체 발급 가능함

서식2

발급번호 제 호

미진학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배정은 받았으나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시 도	구 시(군)	길(로) (읍,면)	길(로)
학교전화	(지역번호:)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서식3

[초등학교] 미취학 사실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본인은 초등학교(국민학교)에 취학한 사실이 없으며, 추후 학력조회에서 초등학교(국민)학교 재학 또는 졸업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수험생과의 관계 :

※ 수험생과의 관계가 본인 또는 직계가족만 제출 가능함

○○○○○○○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4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구 분(해당란에 "○")		성 명			생년월일		
초졸	중졸	고졸					
연락처(집)		연락처(핸드폰)			수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2. 장애종류 / 등급 / 편의 제공 요청 사항							
장애종류	등급	편의 제공 요청 사항(해당란에 "○")					
		대독·대필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시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청각장애)	시간 연장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상지지체 장애							
청각 장애							
3. 장애인의 특징(휠체어 사용 등) 및 기타 요청사항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첨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향후 대필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응시자와의 관계

○ ○ ○ ○ ○ ○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5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

■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중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표기)

면제대상	증명서류	응시자 해당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은 「○ ○ ○ ○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 면제대상 증명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 ○ ○ ○ ○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5-1 검정고시 응시원서 개인접수 시

위임장

1. 본인(위임자) 인적사항

-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2. 대리인(위임받은 자) 인적사항

-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본인(위임자)과의 관계 :

본인은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 ○ ○ ○ ○ ○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5-2 검정고시 응시원서 개인접수 취소 시

위임장

1. 본인(위임자) 인적사항

-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2. 대리인(위임받은 자) 인적사항

-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본인(위임자)과의 관계:

본인은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취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붙임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본인명의로 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 ○ ○ ○ ○ ○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서식6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개정 2017. 12. 1.>

(앞 쪽)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응 시 자 사 진 (3.5cm× 4.5cm)
응시번호()		
주소		
연락처 () - (휴대전화)		
성명	한글 () 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본인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표

응시번호()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응시과목 : 필수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과목 - 면제과목 - 면제신청과목 -	응 시 자 사 진 (3.5cm× 4.5cm)
--	-----------------------------

210mm× 297mm(백상지 80g/㎡)

(뒤 쪽)

시험과목	응시과목	면제 과목			
		과목명	점수	과목합격 고시일 및 시행기관명	
필수과목	국 어			년 월 일 시·도교육감	
	사 회			년 월 일 시·도교육감	
	수 학			년 월 일 시·도교육감	
	과 학			년 월 일 시·도교육감	
선택과목	도 덕	면제 신청 과목			
	체 육	과목명	이수시간	학습과정명	교육기관명
	음 악				
	미 술				
	실 과				
	영 어				
응시과목 합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원본) 대조 확인			

응시자(대표자) 제출서류	※ 해당란에 "○"표로 표시합니다. • 면제 신청 과목에 관한 학습과정 이수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응시자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같음함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외함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과의 대조 등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응시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초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으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험과목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력 기재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고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응시과목란에는 해당 과목에 "○"표로 표시합니다.
2. 면제과목란에는 면제를 원하는 과목에 한정하여 과목명, 점수, 과목합격 고시일 및 시행기관명을 함께 적고 과목합격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면제 신청 과목란에는 면제를 신청하는 과목명을 적고, 학습과정의 총이수시간, 과정명 및 교육기관명을 적되, 교육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관만 적습니다.

서식7

2018년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험표						여권용 사진 (탈모 상반신, 3.5cm×4.5cm, 3개월 이내에 촬영) ※ 교복 사진 불가	
수험번호	(※ 기재하지 않음)		고사장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고시일자	2018년 8월 8일(수)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택필구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I	선택 II
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응시 (“○” 표시)							
면제(기합격 과목/ 점수 기재)							

◆ 시험당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볼펜(흑색) [연필(×)]
 ◆ 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 안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에 시험 종료 후 17:00~ 공개
 ◆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2018. 8. 27.(월) 10:00 ~
 ◆ 합격증서 교부: 2018. 8. 27.(월)-9. 4.(화), 7일간(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제외)

○○○○○○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용지색상: 분홍색 / 용지크기 : 210*447mm / 인쇄방향: 양면인쇄-짧은 가장자리[위쪽]

○ 시험일시: 2018. 8. 8.(수) 09:00~11:40
(제1교시 응시자는 08:20까지 입실완료)

○ 시험 시간표

교시	과목	시간	소요시간
1교시	국어 사회	09:00~09:40	40분
2교시	수학 과학	10:00~10:40	40분
3교시	선택 I 선택 II	11:00~11:40	40분

▶ 점심시간 휴대폰 사용 및 고사장 밖 식사 가능,
도시락을 지참하신 분은 퇴실자 대기실에서 취식 가능.

-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해당 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08:20분까지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시험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 하시기 바람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 ※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또는 청소년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또는 청소년증 발급확인서 또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했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8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 12. 1.>

(앞쪽)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응시번호()		응시자 사진 (3.5cm×4.5cm)							
주소									
연락처 () - (휴대전화)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학 력 사 항									
년	월	일	시	도	시행 합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년	월	일	시	도	구	군	초등학교	졸업	
년	월	일	시	도	구	군	각종학교(고등공민학교)	졸업예정 졸업	
년	월	일	시	도	구	군	중학교	입학	
년	월	일	시	도	구	군	중학교	년	퇴학 수료

본인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르는 선

수험표

응시번호() 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응시과목 : 필수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 면제과목 - 면제신청과목 -	응시자 사진 (3.5cm×4.5cm)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시험과목	응시과목	면제 과목			
		과목명	점수	과목합격 고시일 및 시행기관명	
필수과목	국 어			년 월 일	시·도교육감
	사 회			년 월 일	시·도교육감
	수 학			년 월 일	시·도교육감
	과 학			년 월 일	시·도교육감
	영 어			년 월 일	시·도교육감
선택과목	도덕	면제 신청 과목			
	기술·가정	과목명	이수시간	학습과정명	교육기관명
	체육				
	음악				
	미술				
응시과목 합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 (원본) 대조 확인			

응시자(대표자)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란에 "○"표로 표시하고, 그 밖의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적습니다.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기타: • 면제 신청 과목에 관한 학습과정 이수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초본(응시자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주민등록증 초본을 제외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과의 대조 등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응시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초등학교 졸업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중학교에 진학한 사람으로서 제적(除籍)된 사람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로서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써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을 갈음합니다.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험과목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학력 기재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고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응시과목란에는 해당 과목에 "○"표로 표시합니다.
2. 면제과목란에는 면제를 원하는 과목에 한정하여 과목명, 점수, 과목합격 고시일 및 시행기관명을 함께 적고 과목합격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면제 신청 과목란에는 면제를 신청하는 과목명을 적고, 학습과정의 총이수시간, 과정명 및 교육기관명을 적되, 교육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관만 적습니다.

서식9

2018년도 제2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험표				여권용 사진 (탈모 상반신, 3.5cm×4.5cm, 3개월 이내에 촬영) ※ 교복 사진 불가	
수험번호	(※ 기재하지 않음)	고사장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고시일자	2018년 8월 8일(수)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택필구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응시("○" 표시)					
면제(기합격 과목/ 점수 기재)					

◆ 시험당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 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에 시험 종료 후 17:00~ 공개
 ◆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2018. 8. 27.(월) 10:00 ~
 ◆ 합격증서 교부: 2018. 8. 27.(월) ~ 9. 4.(화), 7일간(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제외)

000000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용지색상 : 하늘색 / 용지크기 : 210*447mm / 인쇄방향 : 양면인쇄-짧은 가장자리[위쪽]

- 시험일시: 2018. 8. 8.(수) 09:00~15:00
(제1교시 응시자는 08:20까지 입실 완료)
- 시험 시간표

교시	과목	시간	소요시간
1교시	국어	09:00~09:40	40분
2교시	수학	10:00~10:40	40분
3교시	영어	11:00~11:40	40분
4교시	사회	12:00~12:30	30분
점심시간			
5교시	과학	13:40~14:10	30분
6교시	선택	14:30~15:00	30분

- ▶ 점심시간 휴대폰 사용 및 고사장 밖 식사 가능,
도시락을 지참하신 분은 퇴실자 대기실에서 취식 가능.

-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해당 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08:20분까지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시험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 ※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또는 청소년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또는 청소년증 발급확인서 또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했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뒤 쪽)

서식10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 12. 1.>

(앞쪽)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응 시 자 사 진 (3.5cm× 4.5cm)
응시번호()		
주소		
연락처 () — (휴대전화)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학 력 사 항						
년	월	일	시도	시행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년	월	일	시도	구군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시도	구군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 졸업
년	월	일	시도	구군	고등학교	입학
년	월	일	시도	구군	고등학교	퇴학 수료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수입증지 (시·도조례로 정함)
시·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르는 선

수험표		응 시 자 사 진 (3.5cm× 4.5cm)
응시번호()		
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응시과목 : 필수과목 -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 면제과목 - 면제신청과목 -		

210mm×297mm(백상지 80g/㎡)

시험과목	응시과목	면제과목			
		과목명	점수	과목합격 고시일 및 시행기관명	
필수과목	국 어			년 월 일	시·도교육감
	사 회			년 월 일	시·도교육감
	수 학			년 월 일	시·도교육감
	과 학			년 월 일	시·도교육감
선택과목	도 덕	면제 신청 과목			
	체 육	과목명	이수시간	학습과정명	교육기관명
	음 악				
	미 술				
	실 과				
	영 어				
응시과목 합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 (원본) 대조 확인			

응시자(대표자) 제출서류	※ 해당란에 "○"표로 표시합니다. • 면제 신청 과목에 관한 학습과정 이수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응시자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같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주민등록증 초본을 제외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과의 대조 등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응시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초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으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험과목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력 기재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고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응시과목란에는 해당 과목에 "○"표로 표시합니다. 2. 면제과목란에는 면제를 원하는 과목에 한정하여 과목명, 점수, 과목합격 고시일 및 시행기관명을 함께 적고 과목합격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면제 신청 과목란에는 면제를 신청하는 과목명을 적고, 학습과정의 총이수시간, 과정명 및 교육기관명을 적되, 교육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관만 적습니다.

서식11

2018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험표						
수험번호	(※ 기재하지 않음)	고사장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고시일자	2018년 8월 8일(수)			
호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택필구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응시(○" 표시)						
면제(기합격 과목/ 점수 기재)						
◆ 시험당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 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에 시험 종료 후 17:00~ 공개 ◆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2018. 8. 27.(월) 10:00 ~ ◆ 합격증서 교부: 2018. 8. 27.(월)-9. 4.(화), 7일간(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제외) 000000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용지색상 : 노란색 / 용지크기 : 210*447mm / 인쇄방향 : 양면인쇄-짧은 가장자리[위쪽]

○ 시험일시 : 2018. 8. 8.(수) 09:00~15:50
(제1교시 응시자는 08:20까지 입실 완료)

○ 시험 시간표

교시	과목	시간	소요시간
1교시	국어	09:00~09:40	40분
2교시	수학	10:00~10:40	40분
3교시	영어	11:00~11:40	40분
4교시	사회	12:00~12:30	30분
점심시간			
5교시	과학	13:40~14:10	30분
6교시	한국사	14:30~15:00	30분
7교시	선택	15:20~15:50	30분

▶ 점심시간 휴대폰 사용 및 고사장 밖 식사 가능, 도시락을 지참하신 분은 퇴실자 대기실에서 취식 가능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해당 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08:20분까지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또는 청소년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또는 청소년증 발급확인서 또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했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검정고시 교육기관 활용 양식

상담일지(2000년)

◎ 상담자명:

◎ 학습자명:

일자	상담 내용

2000년 출석부														
◎ 반명: ◎ 수업요일 및 시간: ◎ 담임교사명:												결 재	담임 교사	교장
													(인)	(인)
연 번	성명	입 학 일자	입 학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학습자 이동사항														
입학														
중퇴														
청강														

8. 검정고시 통합상담센터

1)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 발표 등 검정고시 시행 관련 상담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대표 전화
서울	https://www.sen.go.kr/	02-1396
부산	https://www.pen.go.kr/	051-860-0114
대구	https://www.dge.go.kr/	053-231-0000
인천	https://www.ice.go.kr/	032-423-3303
광주	https://www.gen.go.kr/	062-380-4500
대전	https://www.dje.go.kr/	042-616-8900
울산	https://www.use.go.kr/	052-210-5400
세종	https://www.sje.go.kr/	044-320-1000
경기	https://www.goe.go.kr/	031-1396
강원	https://www.gwe.go.kr/	033-258-5114
충북	https://www.cbe.go.kr/	043-290-2000
충남	https://www.cne.go.kr/	041-640-7777
전북	https://www.jbe.go.kr/	063-239-3114
전남	https://www.jne.go.kr/	061-260-0114
경북	https://www.kbe.go.kr/	054-805-3000
경남	https://www.gne.go.kr/	055-268-1100
제주	https://www.jje.go.kr/	064-1396

2) 검정고시 교육기관 및 학습자의 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상담은 검정고시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검정고시지원센터 대표전화:1800-4602]

참고 문헌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자료집>.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 <제2차 평생학습계좌제 평가 인정학습 과정운영 담당자 연수 자료집>.
3. 김기철, 조윤동, 박영수, 정채관, 김성기(2016),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 검정고시 과목 면제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16-4.
4. 김덕근, 김기철, 가은아, 유창완, 안혜란(2014), <검정고시 반세기, 반성과 미래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O 2014-2.
5. 김덕근, 김기철, 김창환, 이해영, 박창언, 김성기(2015),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제 방향 및 기준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15-1
6. 김성기(2004),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1(1).
7. 김성기(2011), <학력 인정제도 및 관련 법제의 국제 비교 연구>, 한국법학연구, 23(1), 63-83.
8. 김성기(2019), <검정고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구보고, RR 2018-5.
9. 김주훈, 김기철, 박지현(2012), <검정고시 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O 2012-1.
10.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검정고시 업무편람>.
11. 서울특별시교육청(2017.11.20.),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련 지진 대비 요령(수험생용)
12. 안성훈(2007), <학력인정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07-2-4.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검정고시 제도의 주요 쟁점 및 정책 개선 방안>.
14. 행정안전부(2017). <지진 국민행동요령>.

검정고시 매뉴얼 | 교육기관용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인 | 윤여각

발행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발간번호 | PM2018-61

기획 | 신경석(국가문해교육센터장)

조은영(검정고시지원센터)

박진희(검정고시지원센터)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

T. 1800-4602

원문 집필 | 김성기(협성대학교)

김기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덕년(국회 입법조사처)

장덕호(상명대학교)

주현준(대구교육대학교)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자문 | 안진현(삼성실업학교)

윤선희(신갈야간학교)

이기복(동두천 사랑나무야학)

이은주(사)검정고시지원협회

감수 | 강지은(서울시 교육청)

김순희(서울시 교육청)

백명조(서울시 교육청)

오남범(서울시 교육청)

이설영(서울시 교육청)

이한호(경기도 교육청)

임현철(경상북도 교육청)

권광혁(인천광역시 교육청)

디자인·인쇄 | ㈜현대아트컴 TEL. 02) 2278-4482(대)

*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인용, 발췌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